

2025회 계 연 도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소 관 결 산
예 비 심 사 보 고

▣ 보 건 복 지 부	소 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 관
▣ 질 병 관 리 청	소 관

2026.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목 차 】

I.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II. 심사경과	2
III.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3
IV. 대체토론 요지	27
V. 소위원회 심사보고	30
VI. 심사결과	32
VII. 부대의견	33
※ 불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34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6. 8. 21.

보건복지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보건복지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기금결산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연금기금
- 응급의료기금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3. 질병관리청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기금결산

- 국민건강증진기금
- 응급의료기금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 5. 29.

2. 회부일자: 2026. 7. 23.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8.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회부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0.)

상정, 소위원회 심사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6. 8. 21.)

상정, 소위원회 심사, 소위의결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8. 21.)

상정, 소위심사보고, 대체토론, 의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 (I -103쪽) 먼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미처분잉여금 관리 필요’입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은 재외동포·외국인근로자·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지원, 의료자원지원, 이종욱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20억 2,800만원 중 120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동 사업 1년 예산의 84%에 해당하는 미처분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타공공기관이 과다한 미처분잉여금을 보유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므로, 미처분잉여금이 적정 규모로 관리될 때까지 출연금 잔액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I -121쪽)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 및 기금 운용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8조 8,223억 9,400만원 중 8조 8,222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의료급여 지급을 위해 설치된 시·도 의료급여기금의 누적적립금이 0원이 되는 등 의료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여, 국비 기준 2,244억 4,900만원의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료비 지급 지연은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을 높이고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신뢰와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급여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진료비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I -147쪽) 다음은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마련 및 예산편성 필요’입니다.

‘고독사 예방관리체계구축’ 사업은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굴하고 보건·복지·의료 서비스를 연계하여 고독사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2025년 신규 내역사업인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지원 대상자가 당초 계획한 4,977명에 크게 미달하는 2,081명에 그쳤고, 이에 따라 예산액 39억 1,400만원 중 6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청년층 지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불명확한 상태로 사업비의 5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연령별 특성 및 실제 지원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 규모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I -211쪽) 다음은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국내여비 및 국외업무여비의 연례적 계획변경 과다’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전통적 투자자산 외 부동산·사모펀드·인프라 등 다양한 대체투자처를 발굴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6.1%의 기금투자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여유자금 운영 성과는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유자금 운용 내역사업 중 국내·국외업무여비의 계획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최근 4년간 약 145%로, 실제 소요가 지출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연중 자체 계획변경으로 부족액을 충당하여 왔습니다.

지출계획의 자체 변경은 계획안 수립 당시 예견하지 못한 특수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출계획안의 과소 수립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국내·국외업무여비의 실제 소요를 반영하여 지출계획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I -258쪽)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률 및 적립률 제고 필요’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등 초기자금 마련을 위해 월 5만원의 범위에서 본인과 정부가 1:2로 매칭하여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 1,209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의 가입률은 92.9%인 반면, 차상위계층 아동의 가입률은 47.6%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나아가 아동이 저축을 하지 못하여 1년에 한번도 매칭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은 미적립아동 중 77.9%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가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후원 기반을 확충하는 등 이들의 가입률과 적립률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I -374쪽)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충족 및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 실집행률 제고 필요’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인력기준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각 1명 이상 채용이
원칙인데 2025년 기준 전국 256개 중 이를 충족한 센터는 38.7%인 99
개소에 불과하여 인력 기준 충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에 치매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장비가 확충된
치매안심 병동을 설치하는 사업의 실집행률이 4.5%로 부진하므로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I -401쪽) 다음은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 강화 필요’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494억 3,900만원 중 487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경으로 내역사업인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103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실집행 기준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72억 4,800만원,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8억 1,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비 확보 가능성과 실제 집행 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집행상황과 서비스 이용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I -415쪽) 다음은 ‘재택의료 참여기관 및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입니다.

재택의료는 의사(한의사 포함)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팀을 구성해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및 상담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말 기준 재택의료 참여기관은 전국 463개소에 불과하고, 88개 시·군·구는 지역 내 참여기관이 1개소에 그쳐, 일부 지역에서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통합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I -464쪽)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 발생원인 점검 및 해소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정신·감각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673억 8,800만원 중 1,672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지원예산은 77.5% 증가하고, 제공기관은 22.2%, 이용자 수는 38.8% 증가하는 등 사업의 성과가 향상되고 있지만,

2025년의 경우 4,392명의 대기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3개월 이상 장기 대기자가 1,774명으로 40.4%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 발생에는 공급 여건,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매칭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대기자 해소 및 사업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Ⅱ-86쪽 .92쪽) 다음은 ‘법률을 위반한 공중보건장학생의 의무복무 면제 처리’ 및 ‘법령을 위반한 공중보건장학금 납부기한 적용’입니다.

공중보건장학생은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기관에서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간 복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부 공중보건장학생의 의무복무를 면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무복무 이행자들과의 형평성과 공중보건장학생 제도의 신뢰성 및 효과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법적인 의무복무 면제 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한편, 제도운영 실태에 맞도록 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무복무 면제로 장학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공중보건장학생에게 법적 근거 없이 법령상 기한을 상회하는 납부기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법령을 준수하여 반환금 환수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Ⅱ-143쪽) 다음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실효성 및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입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사와 한의사가 협진을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협진 모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여 의·한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10년간 총 19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시범사업에는 총 10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나, 이 중 77.9%인 81개 기관이 한의 의료기관이고 의과 의료기관은 23개에 불과하는 등 참여 기관이 한의 의료기관에 편중되어 있고,

전체 협진 건수도 2023년 약 11만 2천 건에서 2025년 약 5만 8천 건으로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참여 의료기관 구성의 적정성, 협진 실적 감소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범사업의 실효성과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Ⅱ-187쪽) 다음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참여자 모집 제고 등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신약·의료기기 개발, 정밀의료 및 맞춤형의료 등 다양한 바이오헬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전략자산인 ‘바이오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6,624억 8,3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 사업의 핵심 과제인 검체 참여자 모집실적을 보면, 2024년과 2025년 모집인원은 총 12만명으로, 목표 인원 21만명의 57%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참여자 모집 부진에 따른 사업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고, 참여자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Ⅱ-232쪽) 다음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법정 기준 준수 필요’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12.1%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데, 지난 6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에 따르면, 필수의료 기피 심화로 인한 공급 부족 문제와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5년간 2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며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 전환 이후 2029년 누적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 비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Ⅱ-279쪽) 다음은 ‘보조사업자의 실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입니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은 지역 내 필수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의료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를 계약한 필수과목 전문의에게 지역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의사 모집을 7월로 계획하고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지연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9월에 모집할 수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는 9월에 보조금을 2차로 교부하면서 보조금의 실집행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잔여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습니다.

이는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관련 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집행으로, 그 결과 교부된 보조금 13억 5,200만원 중 43.7%인 5억 9,100만원이 실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실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보조금 교부·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Ⅱ-333쪽) 다음은 ‘충분한 음주폐해 예방관리 계획액 확보 필요’입니다.

‘음주폐해 예방관리’ 사업은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음주폐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액 9억 7,500만원 중 9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 범위에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이 추가되었으나, 2025년 음주폐해예방 홍보사업의 계획액은 3억 3,400만원으로, 금연홍보 사업의 계획액 161억 9,500만원의 2.1%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음주폐해예방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숏폼 플랫폼 활용 등 홍보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Ⅱ-406쪽) 다음은 ‘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이용률 제고 필요’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307억 900만원 중 283억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5년의 경우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74.2%에 해당하는 170개 지역에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신규 서비스 신청 접수가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10월 이후 신규 신청자가 크게 감소하는 등 지역별 상담 수요를 고려한 예산 배분 및 집행 관리가 미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5년 바우처 사용기한이 경과한 이용자 중 8회 상담을 모두 완료한 비율이 61%에 그치는 등 이용률도 낮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바우처 이용률 및 상담 서비스의 품질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Ⅱ-438쪽) 다음은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장기 미납 제재 필요’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가 극히 불량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연구개발과제 중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았음에도 미납잔액이 있는 과제는 총 5건인데, 그 중 2건은 납부기한이 각각 1,760일, 1,753일 경과하였고 미납액은 총 2억 7,581만원인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미납 현황과 관련 징수절차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장기 미납액이 적정하게 관리·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Ⅲ-53쪽) 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의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 자체 집행 부적정’입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HACCP 인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징수한 수수료를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귀속·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와 「국고금 관리법」상 국고납입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계 법률에 따라 인증 수수료 수입을 적정하게 귀속·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Ⅲ-62쪽) 다음, ‘신규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백 단축 필요’입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1월 시행되면서 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량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담배 465개 품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 처음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 신규 담배는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에도 약 6개월이 걸려, 출시 후 정보 공개까지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와 고착 효과가 높은 담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규 담배는 판매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유해성분 정보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Ⅲ-112쪽) 다음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가계지원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사업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법정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5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예산 편성 당시 계획되지 않았던 가계지원비를 1인당 50만원씩 총 6,65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법정 위탁사업 참여자의 연봉 등의 지급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전 직원의 복리후생성 가계지원비에 사용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Ⅲ-125쪽) 다음은 ‘의료기기 인증·신고 수수료 수입 자체 집행 부적정’입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중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거나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인증·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납부받는 수수료를 국고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입으로 귀속·집행한 바, 이는 국가사무에 대한 수수료의 국가귀속 원칙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계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귀속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Ⅲ-131쪽) 이어서,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책연구용역 집행 부적정’입니다.

‘연구개발사업 관리’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신규과제 발굴, 과제 기획, 선정·평가, 성과관리 등 R&D 전주기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수행된 24건의 과제 중 11개 과제가 R&D 사업 기획 연구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의 일반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인데, ‘정책기반연구’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개발사업 관리’ 예산은 R&D 관리 기능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 한정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Ⅳ-62쪽) 이어서, 질병관리청 소관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총사업비 협의절차 지연 문제’입니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2017년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이후 총 5개 권역 5개 의료기관 지정이 완료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보조 100% 방식(병원 자부담 별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2024년 12월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대한 질병관리청과 해당 의료기관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2025년에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수수료 예산 5,300만원 중 55만원만 집행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해당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여 상호 간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는 한편,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Ⅳ-105쪽) 다음은,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입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연구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 현액 10억 5,000만원 중 7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타당성 재조사 및 총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일정 및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Ⅳ-115쪽) 다음은, ‘병원체자원의 확보 및 활용 실적 개선 필요 등’입니다.

‘병원체 자원은행 운영관리’ 사업은 감염병 연구개발 및 진단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세균, 항생제 내성균 등 다양한 병원체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7억 7,700만원 중 17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병원체자원의 분양건수는 2022년 4,925건에서 2025년 2,701건으로, 등재건수는 303건에서 191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낮게 설정함에 따라 연례적으로 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성과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병원체자원의 확보를 확대하고 활용을 촉진하는 등 병원체자원의 등재 및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Ⅳ-137쪽) 다음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 필요’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은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환자 및 접촉자 등 관리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와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 증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현액 225억 9,400만원 중 218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C형간염 연령대별 신고현황을 보면, 2025년 현재 항체검사 대상인 56세가 포함된 연령층(50~59세)에서 전체 연령 대비 신고비율이 28.0%이나, 60세 이상과 40~49세의 신고비율도 각각 58.9%와 8.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56세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토대로 양성률, 환자 발견 효과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C형간염의 특성과 국가 퇴치 전략 등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 대상 연령의 단계적 확대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IV. 대체토론 요지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관련 응급실 미수용 기준에 대해 검토할 것
- 자살예방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할 것
- 의료정보 관리에 대한 실태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것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등 국립대병원 정책을 검토할 것
-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 수립 및 보고할 것
- AI, 로봇 등 고려하여 의료인력 추계 방법과 과정 재검토할 것
-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시도별 자율 예산 확대하고, 취약지역을 고려한 예산 배분 원칙 마련할 것
- 달빛 어린이병원의 최소 운영시간과 환자 수 진료수입간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개선할 것
-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 국민연금공단이 정치적 영향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자금운용할 수 있도록 구조 개선할 것
- 아동의 4대 권리 보장, 국가·지자체 책무,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을 검토할 것
- 통합돌봄 관련 인력 배치 미흡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경로당 냉난방비·운영비 지원 확대, 무더위쉼터 지정 연계 등 검토할 것

- 인천도서지역에 지역필수의료센터 건립 검토할 것
-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근무조당 환자 간호사 비율 법제화, 신규간호사 대상 충분한 교육시간 확보, 중소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제도화, 간호사인턴제 도입 등 검토할 것
- 기초연금 개편 시 제기되는 우려점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것
-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 등을 위해 부산침례병원 정상화 노력할 것
- 국가재정사업 구조조정 평가 관련 사업개선, 감액개선 대상 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 개선대책 마련할 것
- 국민연금 리밸런싱 관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 열람 등을 검토할 것
- 지역별 수련병원 격차로 필수의료 전문의 수련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책 마련할 것
- 국립치의학연구원 연구용역계약 관련 계약금액 변동 없이 연구용역 과업 추가 및 연구기간 연장된 건에 대해 조사할 것
- 닥터헬기 활용 시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비만치료제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해외직구에 따른 오남용 등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 검토할 것

- 심평원 적정성 평가 항목에 의료지 인력 관련 평가지표 추가 검토할 것
- 전북권에 권역별 모자의료협력체계 지정을 신속히 검토할 것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개선방안 검토할 것
- 다제약물 관리사업 관련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과 매칭 검토할 것
- 색동원 피해자들이 지역사회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정신병원 입원 문제에 대해 구조적으로 점검할 것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의료기관 참여율 저조 및 중증환자 기피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당 지급 관련 실효성 부진 개선할 것
- 소아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의 의사 인건비 차이로 인한 소아응급의료센터 운영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 기후 위기 관련 돌봄 시스템 마련하고 통합돌봄과 연계할 것
-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한 국립의대 신설 및 인력 확보 검토할 것
- 한의약진흥원과 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에 대한 관계 단체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의 입장 명확화할 것
- 장애영향평가제도 도입추진단 구성 지연 개선하고 즉시 구성할 것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노력할 것

V. 소위원회 심사보고 (소위원장 직무대리: 김기웅 위원)

우리 소위원회는 8월 19일과 오늘 양일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과 보건복지부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정부 측에 주의 9건, 제도개선 184건 등 중복 1건을 제외한 총 192건의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법령을 준수하여 적시적인 공중보건장학생 반환금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예산 투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은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7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 및 집행을 강화하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연도말 집행잔액을 활용한 연구용역 발주를 지양하고,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와 지침을 개선할 것 등 127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회계연도 말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1건의 ‘주의’를 요구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징수한 해썹(HACCP) 인증 수수료 수입을 관계 법률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귀속 처리하고, 향후 국고 납입 후 예산과정을 거쳐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체계로 전환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편성하여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등 24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백신의 도입·유통·접종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1건의 ‘주의’를 요구하고,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추진 경과와 실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를 일괄 중단할 것, 예방접종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교부액을 조정하며, 누적 미지급금을 조속히 정산할 것 등 33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문제에 대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의 단계적 조정 또는 재설계 방안을 모색한다” 등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VI. 심사결과

1. 보건복지부 소관

○ 원안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31건을 첨부하였음.

- 주의 6건
- 제도개선 126건
- 중복 1건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원안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25건을 첨부하였음.

- 주의 1건
- 제도개선 24건
- 중복 0건

3. 질병관리청 소관

○ 원안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34건을 첨부하였음.

- 주의 1건
- 제도개선 33건
- 중복 0건

VII. 부대의견

- 총 2건(보건복지부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음.

※ 붙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 붙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

1.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190 건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보건복지부	-	-	-	6	126	1	131
식품의약품안전처	-	-	-	1	24	-	25
질병관리청	-	-	-	1	33	-	34
합계	-	-	-	8	183	1	190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보건복지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R&D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 - R&D 과제에 대한 제재처분 관리 강화 필요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연구개발비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의 장기 미납에 대한 징수관리가 미흡함. - 2026년 7월 기준 미납잔액이 있는 5건의 총 미납액은 3억 7,574만원이며, 이 중 납부 기한이 지난 3건은 3억 1,541만원에 달함. 2021년 처분된 2건은 4년 이상 총 2억 7,581만원이 미납된 상태이며 법 시행 이후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회수된 사례도 없음. ○ 분할납부·납부기한 연장이 장기간 이루어져 제재처분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2023년 제재처분된 과제 중에는 납부기한을 2029년까지 약 6년 이상 설정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 납부액도 부과액의 2.3%에 불과함. ○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와 최종평가 장기화도 지속되고 있음. - 2021~2025년 제출된 최종보고서 2,145건 중 198건(12.4%)은 보고서 제출 후 평가까지 1년 이상 소요됐으며, 일부 과제는 약 500일까지 지연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장기 미납된 연구개발비 환수금·제재부가금에 대한 독촉 및 강제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최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최종평가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평가기간 점검·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R&D 과제의 중단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공통 - R&D 과제의 중단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보건의료 R&D 과제 중단는 총 68건, 정부출연금은 약 1,039억 8,000만원으로 과제 중단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과제의 정부출연금 규모도 상당함. ○ 기관경영악화, 연구 책임자의 연구 연속성 유지 불가 등 과제선정·수행 과정에서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사유로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음. - 특히 기관경영악화는 2025년 중단과제 18건 중 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목표달성도 미흡으로 중단된 과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후속 환류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목표달성도 미흡으로 중단된 19개 과제에 약 327억 9,0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일부는 정부출연금이 100억원 내외인 대규모 과제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과제 선정·협약 단계에서 수행기관의 재무건전성, 연구책임자·핵심인력의 지속가능성 및 연구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수행 중에도 위험 요인과 단계평가를 면밀히 관리하며, 중단 과제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유사 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관리에 환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련(총괄)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은 2021년 25만 2,490건, 73억 3,500만원에서 2025년 94만 1,905건, 478억 7,8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부 사업과 지역에 위험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2025년 부정수급 적발액 478억원 상단에 비해 회수 결정액은 32억원 수준으로 회수율이 약 6.8%에 그쳐, 부정수급 적발 이후 환수 및 제재 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다수의 제공기관과 종사자가 참여하는 전자바우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공기관의 책임성 및 서비스 제공의 실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고위험 분야 정밀 관리, 환수·제재 및 제공기관 책임성 강화 등 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적기 행정처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징금(56-565)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행정처분은 법령에 따라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는 2020~2024년 코로나19 대응 및 담당자 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지연한 이후 2025년에 행정처분을 집중적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처럼 행정처분 업무가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처분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행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음. * 연도별 행정처분 건수 : ('21) 369건, ('22) 274건, ('23) 200건, ('24) 249건, ('25) 826건 ○ 지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과징금 수납률이 38.8%에 그쳐 미수납 규모가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후 수납률은 더욱 하락하였고 2025회계연도 수납률은 25.5%에 그쳐 2022회계연도보다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였음. * 연도별 징수결정액 대비 과징금 수납률 : ('22) 38.8%, ('23) 27.9%, ('24) 17.8%, ('25) 25.5%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기에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미수납 사유별 체납관리 및 강제징수 조치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과징금 수납률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기준중위소득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계급여(1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기준중위소득은 다수 복지사업의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임에도 기본·추가증가율의 산출 근거, 반영 통계와 정책조정 요인, 가구균등화지수 조정 근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결정과 관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세부 산정자료와 주요 논의·판단 기준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의 정기적 검증 및 환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기준중위소득 산정체계 개편을 검토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계급여(1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가 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산식상 증가율과 실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 증가율 간 괴리가 지속되어 왔고, 이로 인해 1인 가구 기준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2021년 약 46.3만 원에서 2024년 약 65.1만 원으로 확대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실제 가구소득과의 통계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 체계 개편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생계급여 수급가구 선제발굴 및 타 급여와 연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계급여(1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5년 기준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으면서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로 파악됨에도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가 존재하며, 이 중 의료급여 수급 가구만 5만 6천여 가구에 달하는 등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와 타 급여 간 연계를 강화하고, 미신청 사유 파악, 위기정보 및 타 급여 수급정보를 활용한 선제 안내와 사회복지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활성화하는 등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생계급여 과오수급 · 부정수급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계급여(1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3~2025년 생계급여 부정 · 과오수급 환수율은 57~80% 수준에 그치고 있고, 특히 2025년 부정수급 환수율은 35.9%로 크게 하락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와 관련해 사전 예방 중심의 과오수급 · 부정수급 관리대책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계급여(1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생계급여 사업의 지원 내용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 중 10만원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추가로 공제하는 것으로,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 예산은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의 유지 인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가입자 규모와 유지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다 편성됨 -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 관련 예산으로 15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액은 120억 1,100만원으로 집행률은 76.3%에 그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공제 예산 편성 시 단순히 지원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보다는 최근 가입 추이, 실제 참여율, 중도 해지율 및 만기 도래 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수요를 추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 지원 제도의 목적에 따른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계급여(1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생계급여 산정 시 29세 이하 수급권자에게는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되어, 월 소득 10만원 이상 40만원 이하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전액 공제됨. 그럼에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 공제’ 제도는 해당 청년에게 ‘근로소득 공제금’ 명목으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지원은 실질적인 소득공제에 따른 생계급여 증액이라기보다 청년의 저축 및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의 성격을 가짐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예산을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공제할 근로소득이 없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1	생계급여 관련 이·전용 및 불용 반복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집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계급여(1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생계급여 사업의 최근 예산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집행부진(이월,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연중에는 예산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이·전용이 발생하는데도 연말에는 불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 운용의 불안정성이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예산의 이·전용 발생 사유를 유형화하여 반복 발생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규모 불용 양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집행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생계급여 재산 소득환산제 및 자동차 기준의 합리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계급여(1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공공부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나, 재산의 실제 처분·활용 가능성 및 생활 필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주거용 자산은 있으나 현금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의 수급 접근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자동차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 취업·생업활동 등에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재산으로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으며, 생업용 자동차 인정기준 및 배기량 중심 기준은 친환경자동차 확산 등 현실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재산의 소득환산 시 재산의 실제 유동성과 생활 필수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는 빈곤층의 이동권 및 노동시장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대응한 예산추계 및 재정 운용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반복적으로 예산 추계 정확성 부족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2025년 실제 수급자 규모가 예산상 추계치를 상회하는 등 미지급금 발생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 - 2025년 말 의료급여기금 누적적립금은 0원이었고, 국비 기준 2,244억 4,900만원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였음 ○ 한편, 2025년 서울시는 법정 의무지출인 의료급여에 대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해 국비 201억 1,200만원이 의료급여기금으로 편성되지 못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재정 운용 및 집행관리를 강화하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의료급여 부담청구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급여(1132-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담청구 적발기관 비율이 2023~2025년 매년 80%를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부담청구와 관련하여,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기반 탐지시스템 등 사전 예방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간 연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긴급복지(11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긴급복지 지원 대상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계된 사례는 매년 1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통한 연계 실적은 2025년 16건에 불과하여 제도 간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구가 긴급복지를 반복·장기간 수급하거나 기초생활보장급여로 전환되지 못하는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 이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무원의 직권 신청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간 연계 체계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긴급복지의 부정·부적정 수급을 축소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긴급복지(11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긴급복지 부정·부적정 수급 건수는 2022년 208건에서 2025년 400건으로 증가하였고 환수율은 2021년 83%에서 2025년 58.7%로 하락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의 신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적자료 연계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정교화하여 부정·부적정 수급을 축소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긴급복지 수요 예측체계의 구조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긴급복지(11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3년 긴급복지 사업비 본예산이 고갈 위기에 처하자 ‘기초의료급여’ 사업에서 238억 7,800만원을 전용하여 부족 자금을 충당하였고, 2025년에는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28억 9,8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이처럼 긴급복지 예산의 반복적인 전용·추경에는 구조적 파소계상의 가능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와 관련하여 단순한 과거 단기 증가율 적용 대신, 물가상승률, 실업률, 소득분배 지표, 국제유가 변동 등 주요 위기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요 예측 체계를 구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자활성공지원금 보조금 교부 전 집행 가능성 확인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활사업(1137-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와 관련하여,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따를 때 보조금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함.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탈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별 신청 규모에 대한 확인 없이 '25.10.24. 17개 시·도에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였음 - 그 결과 교부액 25억 2,500만원 중 실집행은 1억 2,800만원(약 5%)에 그쳐 교부액의 95%가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교부 전 지방자치단체별 신청 규모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자활성공지원금 미집행 교부액에 대한 반납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탈수급 실적 관리 및 근로요건 확인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1137-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실제 탈수급을 정부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뿐이며, 희망저축계좌Ⅱ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탈수급 요건이 없어 사업 종료 이후에 수급 상태를 유지한 채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두 사업에 대해 탈수급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사업의 성과지표를 탈수급이 아닌 계좌(가입)유지율로 관리하고 있고, 급여수급자가 아닌 가입자의 근로 여부 확인은 연 1회 수준에 그쳐 사업 참여기간 동안 지속적인 근로유지 여부 확인이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자립과 탈수급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탈수급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 지표에 탈수급·자립성과를 반영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근로 요건 확인체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1331-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전수조사 결과 아동생활시설 보호아동 1만 1,899명 중 경계선지능아동은 2,173명으로 18.3%에 달하지만, 2025년 사례관리 참여 아동은 824명에 그쳤음. ○ 동 사업의 예산액은 아동 1인당 50회의 사례관리를 기준으로 편성되었는데 2025년 기준 실제 1인당 평균 이용건수는 37.8건으로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지역별 로도 울산 52.2%, 제주 74.8%, 전남 77.3% 등 실행률 편차가 큰 상황임. ○ 경계선지능아동은 시설 퇴소 이후 학업·취업 및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설 보호기간에만 지원하고 종료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 등 관계기관 사업과 연계해 퇴소 이후까지 지원이 이어질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부진 사유와 사업 미참여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아동 확대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며 시설 퇴소 이후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교육·고용·복지사업과 연계한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자립수당 지급대상의 적정한 추계기준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1331-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자립수당 지급대상자 추계가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2025년 지급대상자를 9,000명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지급결정자는 7,519명(86.0%)에 그쳤으며, 최근에도 예산상 인원 대비 실제 지급인원 미달이 반복되고 있음. - 강원 70.7%, 경남 75.1% 등 지역별 실집행률 편차도 커 보호종료·보호연장아동 추이 등을 반영한 지역별 수요 산정이 필요함. ○ 사업운영비로 편성한 연구용역비가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함. - 일반연구비 4,500만원 중 1,000만원은 타 사업으로 전용하고 3,500만원은 전액 불용하는 등 연구과제 사전기획과 집행관리가 미흡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보호연장아동 및 실제 신청·지급실적을 반영한 지급대상 추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배분에 반영하며 연구용역비의 전용·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운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1331-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사업과 관련하여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인력운용 현황을 보면 2025년에 퇴직한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총 63명으로, 정원 230명 대비 퇴사율은 27.4%였으며, 인사이동 및 휴직대체까지 포함할 경우 인력 변동 규모는 68명으로 정원 대비 29.6%에 이릅니다. < 자립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퇴직자 현황 > (단위: 명) <table><tr><th colspan="9">2025년</th></tr><tr><th rowspan="2">정원</th><th rowspan="2">기준인 원 (A)</th><th colspan="3">채용인원(B)</th><th colspan="3">퇴직자(C)</th><th rowspan="2">기준 현원 (A+B-C)</th></tr><tr><th>신규채용</th><th>인사이동</th><th>휴직대 체</th><th>퇴사</th><th>인사이 동</th><th>휴직대 체</th></tr><tr><td>230</td><td>205</td><td>85</td><td>2</td><td>4</td><td>63</td><td>3</td><td>2</td><td>228</td></tr></table> ○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특히 부산광역시는 정원 20명 대비 퇴사자가 18명으로 퇴사율이 90%에 달하고, 경상북도 54.5%, 울산광역시 50.0% 등 일부 지역에서 정원 대비 퇴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2025년									정원	기준인 원 (A)	채용인원(B)			퇴직자(C)			기준 현원 (A+B-C)	신규채용	인사이동	휴직대 체	퇴사	인사이 동	휴직대 체	230	205	85	2	4	63	3	2	228						
		2025년																																																
		정원	기준인 원 (A)	채용인원(B)			퇴직자(C)					기준 현원 (A+B-C)																																						
신규채용	인사이동			휴직대 체	퇴사	인사이 동	휴직대 체																																											
230	205	85	2	4	63	3	2	228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의 퇴직 원인, 공백 발생 여부, 처우 수준 및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장기근속 및 인력공백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1331-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 예산 편성 시에는 6,50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의료비 지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의료비 국고지원을 받은 자립준비청년은 2,621명으로 예산 편성 기준 인원의 40.3%에 그쳤음. 이에 따라 실집행액은 4억 400만원(실집행률 35.9%)에 머물러 당초 편성 규모에 비해 실제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실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예산액</th> <th>집행액</th> <th>실집행액</th> <th>실집행률</th> </tr> </thead> <tbody> <tr> <td>2023</td> <td>1,145</td> <td>495</td> <td>411</td> <td>35.9</td> </tr> <tr> <td>2024</td> <td>1,350</td> <td>1,306</td> <td>283</td> <td>20.9</td> </tr> <tr> <td>2025</td> <td>1,125</td> <td>1,120</td> <td>404</td> <td>35.9</td> </tr> </tbody> </table>				구분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3	1,145	495	411	35.9	2024	1,350	1,306	283	20.9	2025	1,125	1,120	404	35.9
		구분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3	1,145	495	411	35.9																						
2024	1,350	1,306	283	20.9																						
2025	1,125	1,120	404	35.9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산정 방식, 의료이용 실적, 홍보 및 안내 체계 등을 점검하고 사업 실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사업비 추계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가정위탁·입양 아동 수요의 적정한 추계기준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가정위탁 지원·운영(13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일부 내역사업에서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아동용품구입비의 2025년 실집행률은 63.0%, 입양대상아동 보호비는 56.3%에 그쳤으며 지역별 집행편차도 크게 나타남. ○ 전문아동보호비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4억 5,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음에도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2억 9,3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수요와 매칭 가능성에 대한 사전 점검이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신규 보호아동 발생 규모, 기존 지원이력, 공적입양체계 운영실적 및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반영한 수요 추계기준을 마련하고, 연도 중 실제 집행상황에 따라 교부액을 조정하는 등 실집행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공적 입양체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적 입양체계 관리·운영(1333-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5년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되었으나 2026년 3월 기준 최종 입양이 완료된 사례가 없고,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방자치단체·법원간 다단계 절차로 지연 우려가 나타남. 예비양부모 605가정 중 가정환경조사가 완료된 가정은 110가정에 그치는 등 매칭·법원허가 절차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과 책임기관을 명확히 하고 정보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체계와 지연사례 점검·조정절차를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가정환경조사 및 적합성 심사 인력·조직 역량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아동발달지원 계좌의 자산형성기능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1335-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아동발달지원계좌는 2025년 신규 편입 차상위계층 아동의 가입률이 47.6%, 저축률이 81.4%에 그쳐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실행행률이 78.9%에 머물렀음. 미적립 아동은 3,715명이며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아동이 3,60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 아동발달지원계좌 중도해지에 따른 정부 매칭지원금 미수납액이 최근 5년간 누적 1,154억원에 달하고 지자체별 징수결의 지연으로 환수 절차가 일관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이후 누적 적립금 미인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후원한 민간후원률은 2021년 61.9%에서 2025년 45.8%로 낮아졌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통합 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차상위계층 등 신규 대상자의 가입률을 높이고 만기해지·인출 절차 간소화, 민간후원 확대, 미적립 아동에 대한 민간 후원 우선 연계 등 지원 방안을 강화할 것 ○ 보건복지부는 실제 적립률·미적립률 등을 성과관리 지표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자산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사업을 개선할 것 ○ 보건복지부는 가입률·저축률을 고려한 실수요 기반 예산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아동보호전문기 관 확대 및 거점심리치료센 터 인력 충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339-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지연이 반복되고 거점 심리지원센터의 인력 미충원이 발생하고 있음. - 2025년 누적 설치목표는 119개소였으나 실제 설치는 102개소에 그쳤고, 신규설치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행행률도 52.3%에 불과하며, 나아가 건물 확보나 리모델링 및 지방비 확보 등의 지연이 반복되고 있음. - 거점 심리지원팀 인력 근무현황을 보면 25년 말 기준 정원 51명 중 현원 43명으로 8명이 미충원된 상태이며 제주에는 근무인력이 1명도 배치되지 못하였고 실행행률도 80.9%에 머물러 전문인력의 처우 및 채용여건 개선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방자치단체별 설치 추진상황, 지방비 확보 여부, 시설 확보 절차를 점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며 거점심리지원센터 인력 충원에 노력하고 예산 추계가 실수요에 기반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장애인연금 급여의 수급자 유형별 소요 추계 및 집행 점검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연금 사업(1531-305)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장애인연금 급여’ 관련, 장애이연금 급여는 최근 5년간 수급자 수와 수급률이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2025년에는 당초 예산만으로 급여 소요를 충당하지 못해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224억원을 증액 이용하였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장애인의료비 지원 누적 미지급금의 조속한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1531-31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은 실제 의료비 소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진료 기피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저하 우려가 있음. - 2021년에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0억원을 전용하여 누적 미지급금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27억 6,9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액 358억 6,800만원의 약 63.5%에 달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연도별·지역별 미지급금 규모와 발생 원인을 전수 점검하고, 추경·본 예산 반영 등을 통한 해소 일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요 추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중앙보조기기센 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1532-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중앙보조기기센터 운영 지원’ 관련, 중앙보조기기센터는 육아휴직에 따 른 대체근로자 채용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어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상용임금 6,800만원과 고용부담금 1,700만원이 불용되었 는데, 이 같은 대체인력 채용 지연은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 증가 및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2021년 ~ 2025년 중앙보조기기센터 육아휴직 현황 >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th> <th>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th> </tr> </thead> <tbody> <tr> <td>2021년</td> <td>육아휴직자 2명, 대체근로자 미채용</td> </tr> <tr> <td>2023년</td> <td>육아휴직자 2명 중 1명만 대체근로자 채용</td> </tr> <tr> <td>2024년</td> <td>육아휴직자 1명, 휴직 개시 약 4개월 후 대체근로자 채용</td> </tr> <tr> <td>2025년</td> <td>육아휴직자 4명 중 3명 대체근로자 채용, 이 중 2명은 휴직 개시 후 1개월 이상 경과 후 채용</td> </tr> </tbody> </table>				연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	2021년	육아휴직자 2명, 대체근로자 미채용	2023년	육아휴직자 2명 중 1명만 대체근로자 채용	2024년	육아휴직자 1명, 휴직 개시 약 4개월 후 대체근로자 채용	2025년	육아휴직자 4명 중 3명 대체근로자 채용, 이 중 2명은 휴직 개시 후 1개월 이상 경과 후 채용
		연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													
2021년	육아휴직자 2명, 대체근로자 미채용															
2023년	육아휴직자 2명 중 1명만 대체근로자 채용															
2024년	육아휴직자 1명, 휴직 개시 약 4개월 후 대체근로자 채용															
2025년	육아휴직자 4명 중 3명 대체근로자 채용, 이 중 2명은 휴직 개시 후 1개월 이상 경과 후 채용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 예정자 사전 파악 및 휴직 개시 전 채용 절차 진행이 가능하 도록 중앙보조기기센터의 대체인력 채용 체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반복적인 예산조정에 의존하는 연구개발비 집행 관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지원관리 사업(1532-30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연구개발비’ 관련, 연구개발비를 2025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에서 2,000만원을 증액 전용 후, 같은 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연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4,300만원을 다시 감액 전용하는 등 세부사업 간 예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집행하였음. - 2023년에도 타 세부사업에서 4,500만원을 전용받고, 동 사업 내 일반연구비 4,5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총 9,000만원의 연구비를 확보한 바 있어, 연구수요와 소요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예산 반영이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연구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세부사업별 연구수요는 해당 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등 연구개발비 집행 관행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이용률 제고 및 활동지원사 연계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는 2021년 12만여 명에서 2025년 17만여 명으로 증가했음에도 실제 이용률은 80% 수준에 정체된 상황임. - 복지부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상시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의 33.3%가 부여받은 급여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주 이유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함이 32.0%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사 연계 체계 및 장기 미이용자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미이용 기간과 사유를 개인적·공급 측 사유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활동지원사 부족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제 이용률, 장기 미이용자 수 및 활동지원사 연계 실적 등 실질적인 서비스 성과가 반영되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활동지원기관 급여비용의 임금 사용 관리 강화 및 75% 권고 기준 적정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활동지원급여’ 관련,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기관이 급여비용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 임금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기관별 임금 사용 비율과 권고 기준 준수 여부를 중앙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지 않고 있음. - 활동지원급여 단가는 2021년 1만 4,020원에서 2025년 1만 6,620원으로 지속 인상되었으나, 기관별 임금 사용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어 단가 인상이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기관별 급여비용 중 임금 사용 비율과 75% 이상 임금 사용 권고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75% 기준이 활동지원사의 법정수당, 4대 보험 사용자부담분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한 법정인건비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하는 등 활동지원급여의 집행 관리 방식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가산급여 누적 미지급금 해소 및 반복 발생 방지를 위한 예산 추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활동지원(15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가산급여’ 관련, 가산급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리 지연 및 초과수요 등으로 미지급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 220만원이던 누적 미지급금이 2025년 5억 5,500만원으로 증가한 후 해소되지 않고 있음. < 2021년~2025년 가산급여 미지급금 현황 > <table> <tr> <th>구분</th> <th>2021년</th> <th>2022년</th> <th>2023년</th> <th>2024년</th> <th>2025년</th> </tr> <tr> <td>연간 미지급금</td> <td>220만원</td> <td>20만원</td> <td>5억 2,200만원</td> <td>3,100만원</td> <td>-</td> </tr> <tr> <td>누적 미지급금</td> <td>220만원</td> <td>240만원</td> <td>5억 2,400만원</td> <td>5억 5,500만원</td> <td>5억 5,500만원</td> </tr> </table>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간 미지급금	220만원	20만원	5억 2,200만원	3,100만원	-	누적 미지급금	220만원	240만원	5억 2,400만원	5억 5,500만원	5억 5,500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간 미지급금	220만원	20만원	5억 2,200만원	3,100만원	-																					
누적 미지급금	220만원	240만원	5억 2,400만원	5억 5,500만원	5억 5,500만원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가산급여 누적 미지급금의 규모와 발생 원인을 재점검하고,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별도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집행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및 수요 추계 방식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 발생 원인 점검 및 해소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1535-305)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용자 수가 38.8% 증가한 반면, 제공기관은 22.2%, 제공인력은 6.6%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2026년 5월 말 대기자는 5,965명으로 2025년 말 대비 35.8% 증가하였음. ○ 또한, 국비 예산과 편성 기준 인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실제 이용 인원이 편성 기준을 초과하고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어,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를 예산 편성 및 공급 기반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실제 수요와 이용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 기반 예산을 편성하고, 대기자 관리 및 지원 단가 적정성을 검토하며, 지역별 수요·공급 규모, 제공인력 활용 실태, 매칭 현황 및 예산 지원 규모가 대기자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분석하여 대기자 해소 및 종합적인 사업 운영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 발달증진센터 미지정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지원’ 관련,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의료기관의 공모 참여 저조로 당초 운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음. ○ 2025년 기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전국 13개소가 운영 중임. < 2024년~2025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공모 현황 > <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운영 목표</th><th>공모 횟수</th><th>공모 결과</th><th>불용액</th></tr></thead><tbody><tr><td>2024년</td><td>16개소</td><td>3회</td><td>신규 지정 없음</td><td>13억 6,800만원</td></tr><tr><td>2025년</td><td>20개소</td><td>4회</td><td>1개 기관 지정</td><td>23억 9,400만원</td></tr></tbody></table>			구 분	운영 목표	공모 횟수	공모 결과	불용액	2024년	16개소	3회	신규 지정 없음	13억 6,800만원	2025년	20개소	4회	1개 기관 지정	23억 9,400만원
		구 분	운영 목표			공모 횟수	공모 결과	불용액												
2024년	16개소	3회	신규 지정 없음	13억 6,800만원																
2025년	20개소	4회	1개 기관 지정	23억 9,400만원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의 지정 요건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부담과 현행 개소당 지원 수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국고보조금 100% 사업임을 고려하여 미지정 시·도의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8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의 대기자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및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관련,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는 2025년 실행행률이 90%대로 개선되었으나, 주간활동서비스 대기자가 2,976명, 방과후활동서비스 대기자가 5,529명에 달하는 등 공급 병목으로 대기자가 매년 누적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는 제공기관 수용 부담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25년에는 두 서비스 모두 17개 시·도 전 지역에서 대기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소당 및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 수가 높게 나타나는 등 제공기관·제공인력의 수용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증가하는 대기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별 공급 기반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의 대기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대기 수요가 집중되거나 제공기관별 수용 부담이 큰 지역을 우선하여 제공기관 확충과 운영 여건 개선을 추진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확대 및 신규 제공기관 확충 등 공급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대기수요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1:1 지원 사업): 추경 편성에도 지속되는 실집행 부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관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전년 대비 실집행률이 개선되었으나, 제공기관과 전문인력 확보가 미흡하고 지역별·서비스 유형별 공급 격차가 지속되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24시간 개별 1:1 지원의 경우는 실집행률이 57.1%에 그치고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24시간 제공기관이 단 1개소에 불과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전문수당과 서비스 단가 인상 등 종사자 및 제공기관 참여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정교한 인프라 확충 전략을 추진하며 실집행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1:1 지원 사업): 추경 편성에도 지속되는 실행 부진 해소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발달장애인 지원(1535-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관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2025년 실행률은 24시간 개별 1:1 지원 57.1%, 주간 개별 1:1 지원 68.2%, 주간 그룹형 1:1 지원 48.6%로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으며(실제 불용액은 376억 2,500만원), 추경 이후 종사자는 증가하였으나 이용자 확대가 이에 미치지 못해, 인력 확보가 실제 서비스 제공과 집행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였음. <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 <table><tr><th>2025년</th><th>1월</th><th>2월</th><th>3월</th><th>4월</th><th>5월</th><th>6월</th><th>7월</th><th>8월 (추경)</th><th>9월</th><th>10월</th><th>11월</th><th>12월</th></tr><tr><td>종사자 수 (명)</td><td>921</td><td>982</td><td>1,033</td><td>1,099</td><td>1,120</td><td>1,165</td><td>1,191</td><td>1,333</td><td>1,409</td><td>1,476</td><td>1,530</td><td>1,609</td></tr><tr><td>이용자 수(명)</td><td>-</td><td>-</td><td>633</td><td>-</td><td>-</td><td>801</td><td>-</td><td>-</td><td>915</td><td>-</td><td>-</td><td>998</td></tr></table> 주1): 이용자 수는 각 분기말 기준임.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추경)	9월	10월	11월	12월	종사자 수 (명)	921	982	1,033	1,099	1,120	1,165	1,191	1,333	1,409	1,476	1,530	1,609	이용자 수(명)	-	-	633	-	-	801	-	-	915	-	-	998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추경)	9월	10월	11월			12월																																							
종사자 수 (명)	921	982	1,033	1,099	1,120	1,165	1,191	1,333	1,409	1,476	1,530	1,609																																											
이용자 수(명)	-	-	633	-	-	801	-	-	915	-	-	998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최중증발달장애인 1:1 지원 사업의 유형별 집행 부진 원인을 분석하여 이용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에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업은 연 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단기적인 집행 개선과 중장기 적인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기반 확충을 함께 추진할 것. ○ 보건복지부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실제 제공기관·인력 확보 가능 성과 사업 준비기간을 반영하고 지역별 신청·미신청·미선정 사유 및 서비스 공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장애인 개인예산제 급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1535-31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급여유연화 개인예산제’ 서비스 관련, 급여유연화 개인예산제 서비스의 실적행은 예산액 10억 9,700만원 중 8억원만 집행되어 실적행률 72.9%에 그쳤음. - 특히, 바우처 확대 모델 참여자 325명 중 277명(85.2%)이 1개 바우처만 활용하는 등 개인예산으로 전환·활용되는 급여 규모와 서비스 범위가 제한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활동지원 기반 모델과 바우처 확대 모델 비교 > <table><tr><th>구분</th><th>활동지원기반모델</th><th>바우처확대모델</th></tr><tr><td>대 상</td><td>-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이 있는 등록장애인</td><td>-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 방과후), 발달재활 중 1개 이상 수급권이 있는 등록장애인</td></tr><tr><td>개 인예 산 액</td><td>- 활동지원급여의 10%, 15%, 20% 중 택1</td><td>-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 방과후), 발달재활 급여의 10%, 15%, 20% 중 택1</td></tr><tr><td>이용방식</td><td colspan="2">- 선택한 비율 급여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사회생활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활용</td></tr></table>			구분	활동지원기반모델	바우처확대모델	대 상	-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이 있는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 방과후), 발달재활 중 1개 이상 수급권이 있는 등록장애인	개 인예 산 액	- 활동지원급여의 10%, 15%, 20% 중 택1	-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 방과후), 발달재활 급여의 10%, 15%, 20% 중 택1	이용방식	- 선택한 비율 급여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사회생활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활용	
		구분	활동지원기반모델			바우처확대모델											
대 상	-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이 있는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 방과후), 발달재활 중 1개 이상 수급권이 있는 등록장애인															
개 인예 산 액	- 활동지원급여의 10%, 15%, 20% 중 택1	-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주간, 방과후), 발달재활 급여의 10%, 15%, 20% 중 택1															
이용방식	- 선택한 비율 급여 범위 내에서 개인예산이용계획에 따라 일상·사회생활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활용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제의 활용 가능 서비스와 바우처 전환·연계 방식이 참여자의 실제 욕구와 이용 행태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장애인의료재활 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반복적인 목표 미달 개선을 위한 사업 관리 및 지원 방식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1536-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관련,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수요가 있음에도 기능보강 지원유형별 목표 달성 실적이 저조한 상황하고, 국고보조율도 유사 기능보강 사업의 50%보다 낮은 30%로 운영되고 있음.															
			< 2021년~2025년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목표 대비 실적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예산상 목표</th> <th>실적</th> </tr> </thead> <tbody> <tr> <td>2021년</td> <td>-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7개소</td> <td>- 증개축: 0개소 - 개보수: 4개소 - 장비보강: 2개소</td> </tr> <tr> <td>2022년</td> <td>-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7개소</td> <td>- 증개축: 0개소 - 개보수: 2개소 - 장비보강: 1개소</td> </tr> <tr> <td>2023년</td> <td>-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7개소</td> <td>- 증개축: 0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4개소</td> </tr> <tr> <td>2024년</td> <td>-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6개소</td> <td>- 증개축: 0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4개소</td> </tr> <tr> <td>2025년</td> <td>-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4개소</td> <td>-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2개소 - 장비보강: 1개소</td> </tr> </tbody> </table>			구분	예산상 목표	실적	2021년	-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7개소	- 증개축: 0개소 - 개보수: 4개소 - 장비보강: 2개소	2022년	-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7개소	- 증개축: 0개소 - 개보수: 2개소 - 장비보강: 1개소	2023년	-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7개소	- 증개축: 0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4개소	2024년
구분	예산상 목표	실적																
2021년	-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7개소	- 증개축: 0개소 - 개보수: 4개소 - 장비보강: 2개소																
2022년	-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7개소	- 증개축: 0개소 - 개보수: 2개소 - 장비보강: 1개소																
2023년	-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7개소	- 증개축: 0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4개소																
2024년	-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6개소	- 증개축: 0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4개소																
2025년	-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3개소 - 장비보강: 4개소	- 증개축: 1개소 - 개보수: 2개소 - 장비보강: 1개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지원 유형별 목표 미달 사유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사업의 목표 설정과 집행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유사 기능보강 사업과의 국고보조율 차이 및 장애인의료재활시설별 재정 여건을 점검하여 현행 국고보조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 및 인력 확보 계획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1536-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관련,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은 2025년 예산 5억 5,800만원이 전액 교부되었으나, 기능보강 공사 및 인력 채용이 지연되어 실제 집행액은 900만원에 그쳤음. - 기능보강비 4억원은 공사 지연으로 전액 이월되었고, 추가 인력 10명 중 2025년 말까 지 4명만 채용되는 등 사업 일정과 인력 확보 계획 간 연계가 미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수행기관 선정 이후 설계·공사 및 장비 구비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월 된 기능보강비의 원활한 집행과 사업의 적기 개시를 위해 기능보강 일정과 인력 채용 계획을 연계하는 한편, 4교대 근무체계와 결원 현황 및 현장의 추가 인력 수요 등을 토대로 지원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인권지킴이지원 센터 운영 사업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행기관 선정 기준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1536-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관련, 인권지킴이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공모에서도 제공 모까지 실시하였으나 동 협회 1개 기관만 신청하여 다시 선정되었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원·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시설 운영 법인의 대표자 및 시설장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단체로,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상황 과 조치 이행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독립성·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우 려가 있을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인권지킴이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이해관계 여부,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5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 체계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1536-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인권실태조사’ 관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그간 비공개되어 왔으나,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사건이 장기간 은폐되거나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조사 결과를 비식별화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2025년 전수조사에서는 시설 현황, 인권예방활동 및 인권상황 점검 결과 일부를 비식별화하여 공개한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6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 격차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체계 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154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관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전체 개소 수가 2021년 234개소에서 2025년 260개소로 증가하였으나, 국비 지원 대상은 같은 기간 75개소로 유지되어 국비 지원 비중이 낮아지고, 나머지 센터는 지방비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음. - 2025년 센터당 평균 종사자 수는 국비 지원 센터 5.2명, 지방비 지원 센터 5.4명으로 유사하나, 평균 예산은 각각 2억 5,900만원과 2억 3,600만원, 일평균 이용자 수는 30명과 26명으로 국비 지원 센터가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지원 재원에 따라 센터의 운영 여건과 서비스 제공 규모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제공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지원 대상 75개소의 적정성을 포함하여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7	장애인보조건 훈련·보급 공백 방지를 위한 수행기관 신청자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154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장애인보조건 전문훈련기관 지원’ 관련, 장애인보조건 전문훈련기관은 최근 5년간 공모 참여기관이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1개소에 그쳤으며, 2025년에는 동 협회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수행기관 선정이 취소된 후 대체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못하여 예산 1억 4,6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 현행 기준에 따르면 공모 신청 자격이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보조건 훈련 역량을 갖춘 기관이 있더라도 법인 형태에 따라 참여가 제한되는 등 대체 수행기관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보조건 훈련·보급 사업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현행 수행기관 신청자격과 선정기준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공공성·회계투명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장치를 전제로 보조건 훈련 역량을 갖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 확대·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	기초연금지급 등 법정의무지출 사업의 신속집행 대상 제외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초연금지급(2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1조 3,514억 4,200만원 중 21조 2,028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1,486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법정의무지출로서 국고보조금 교부 일정을 앞당기더라도 수급권자에게 곧바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상반기 신속집행제도’의 민생회복·경기진작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신속집행 대상으로 선정·관리되어 그 실적이 과장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신속집행을 사유로 2025년 3월 18일 약 4조 8천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국고보조금 교부액(21조 1,794억 4,800만원) 중 48.8%가 1분기 중 교부 완료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지급 등 법정의무지출 사업을 신속집행 대상으로 선정·관리하지 아니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9	기초연금 재원의 목적 외 활용 최소화 및 재정수요 정밀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초연금지급(2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최근 4년간 동 사업의 이·전용(감) 규모가 총 4,025억 6,500만원에 이르는 등 기초연금 재원의 이·전용 문제가 반복·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표] 최근 4년간 기초연금지급 세부사업 이·전용(감)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 <th>구분</th> <th>이용(감)</th> <th>전용(감)</th> <th>계</th> </tr> <tr> <td>계</td> <td>△400,270</td> <td>△2,295</td> <td>△402,565</td> </tr> <tr> <td>22결산</td> <td>△119,739</td> <td>-</td> <td>△119,739</td> </tr> <tr> <td>23결산</td> <td>△8,652</td> <td>△1,135</td> <td>△9,787</td> </tr> <tr> <td>24결산</td> <td>△201,326</td> <td>△1,160</td> <td>△202,486</td> </tr> <tr> <td>25결산</td> <td>△70,553</td> <td>-</td> <td>△70,553</td> </tr> </table>				구분	이용(감)	전용(감)	계	계	△400,270	△2,295	△402,565	22결산	△119,739	-	△119,739	23결산	△8,652	△1,135	△9,787	24결산	△201,326	△1,160	△202,486	25결산	△70,553	-	△70,553
		구분	이용(감)	전용(감)			계																							
계	△400,270	△2,295	△402,565																											
22결산	△119,739	-	△119,739																											
23결산	△8,652	△1,135	△9,787																											
24결산	△201,326	△1,160	△202,486																											
25결산	△70,553	-	△70,553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재원의 목적 외 활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0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실집행잔액 적기 반납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초연금지급(2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실집행잔액은 3,299억 1,9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이나 2026년 8월 19일 기준 반납률은 0.87%(28억 6,2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교부되는 보조금의 실집행잔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 반납 의무가 면제되어 실집행잔액의 반납 지연이 국가재정에 기회비용을 야기하고 있음. * (실집행 잔액) ('21) 866억 2,500만원 ('22) 1,048억 4,700만원 ('23) 1,100억 5,900만원 ('24) 990억 9,500만원 ('25) 3,299억 1,900만원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실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 추이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교부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조치 등 실집행잔액의 적기 반납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실효적 수단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1	기초연금 교육훈련사업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초연금지급(21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 및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 교육훈련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일반용역비 8,000만원), 강사 활동기간이 해당 연도로 제한되어 매년 강사 선발·양성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강사 1인당 연평균 강의횟수가 약 2.8회에 불과하여 기존 강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연간 강의수요에 비하여 강사 양성 규모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기존 강사 인력풀을 지속 활용하는 방식으로 선발·운영체계를 개선하고, 강사 1인당 강의횟수·활용률 등 성과지표를 용역계약에 반영하여 실제 교육수요에 맞게 강사 양성 규모를 조정하는 등 기초연금 교육훈련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 인계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비 지원(2132-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13년 대비 2025년 소비자물가는 약 25.4% 상승하였으나 특별생계비(월 7만 5,000원)·집기비품비(140만원)·임대보증금(1,770만원) 등 지원단가는 변동이 없음. ○ 2025년의 경우 예산상 지원인원은 234명이지만 실제 신청자는 722명으로 약 3.1배에 달하며, 법 개정으로 동반가족 범위가 확대된만큼 향후 수요 증가 가능성도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정착비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성과 법 개정 이후 신청 수요의 증가 추이가 지원단가 및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사업이 이관된 재외동포청에 충실히 인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3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실효성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보호전문기관(21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쉼터 운영 지원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 확인결과 노인학대 건수는 줄지않고 증가하는 실정임. * 인천시의 경우, 해당 예산은 2021년 5억 1,900만원에서 2025년 6억 2,8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나 노인학대건수 또한 2021년 379건에서 2025년 621건으로 약 63.8% 증가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 예방사업 정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4	노인학대 대응인력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제고 및 전용상담 전임인력 확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보호전문기관(2133-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노인학대 대응인력의 처우와 전용상담 인력 운영이 보호수요 증가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노인보호전문기관 96.1%, 학대피해노인 전용상담 94.7%로 국고지원시설 평균 96.4%에 미달함. ○ 노인학대 신고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 인력기준은 상담장과 전문인력 일부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겸임을 허용하고 있어 피해노인 보호·치유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구조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상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이고, 상담의 업무량과 이용실적을 분석하여 겸임인력을 단계적으로 전임인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5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및 부식비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단체 지원(2133-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경로당 냉방비는 7월 및 8월에 해당하는 2개월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5·6월과 9월에도 온열질환자가 상당수 발생하는 등 폭염 위험기간이 확대되고 있음. ○ 2025년 9월말 기준 식사 제공 중인 경로당은 전체의 88.0%이며, 평균 식사 제공 횟수는 주 3.6회로 주 5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부족한 실정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경로당의 지역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해 냉방비 지원기간을 실제 온열질환 발생 시기와 기상여건에 맞게 확대 조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것 ○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게 균형있는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부식비 지원을 위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6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적 참여 관리 및 질적 고도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2139-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노인일자리사업의 중도포기 인원이 2023년 11만여 명에서 2025년 13만여 명으로 늘고 공동체사업단 중도포기율도 3년 연속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등 지속적인 참여 관리와 질적 고도화가 미흡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업유형별 중도포기 원인을 분석하여 지속적인 참여 관리를 체계화하고 지역사회 수요 기반의 직무설계, 생활권 중심의 정밀 매칭, 서비스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취업지원센터 종사자 각종 수당 제도 개선 등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7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의 저소득 노인 지원 및 소득보완 기능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2139-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노인일자리사업의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저소득 노인의 주요 소득보완 수단임에도 기초연금 수급 여부 중심의 선정기준으로는 저소득 노인을 우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활동비도 시간당 9,667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임. 또한 연 11개월 운영으로 1개월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노인의 소득보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행 기초연금 수급 여부 중심의 선정기준을 보완하고, 향후 활동비 산정 시 물가 및 생활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참여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완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활동비 수준을 현실화하며,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참여자의 소득보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 11개월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8	아이돌봄 시범사업의 낮은 연계율 원인 분석 및 향후 유사 사업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2139-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아이돌봄 시범사업의 목표 연계 인원 5,000명 중 실제 연계 인원은 499명에 그쳐 교육 이수자 대비 연계율이 25.0%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아이돌봄 시범사업의 낮은 모집·연계율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 사업에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9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문제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231-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액은 2023년 667억원에서 2025년 298억원으로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재정 누수가 지속되고 있음. * 부당청구액 : ('23) 666억 7,400만원, ('24) 464억 1,600만원, ('25) 298억 2,000만원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문제 해소를 위하여 사후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기반 이상청구 탐지 시스템 고도화 등 사전 예방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공급자 관리 강화를 통해 구조적 통제를 강화할 것		
60	노인장기요양보험 과태료 체납 정리, 불납결손 정상화 및 강제징수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231-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과태료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이자 재정 보전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실제 운영에서 징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수납률 저조와 체납 누적·불납결손 미처리로 재정 신뢰성과 제도 규율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 ('21) 0.1%, ('22) 4.5%, ('23) 0%, ('24) 0%, ('25) 1.5%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과태료와 관련하여 체납 정리와 불납결손 정상화를 노력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1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의 성과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2533-30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상담기관 운영 실적행률이 96.8%로 양호한 반면 보호출산 산모 지원 실적행률은 36.1%에 그치고 지역별 상담인력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신생아 긴급보호비도 실적행률이 27.6%에 그쳤고, 지방자치단체별 집행률도 0~76.4%로 편차가 큼. ○ 다양한 사업을 지역상담기관 지정 건수라는 단일 성과지표로 관리하여 실질적인 사업 성과 측정이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보호출산 지원 수요 산정 방식과 사업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보호출산 신청·지원 실적 및 출생미등록·아동유기 관련 통계를 반영하여 사업 규모와 교부액 산정방식 등 지원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 보건복지부는 상담·서비스 연계, 보호출산 지원 및 신생아 보호성과 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추가하여 사업성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것 ○ 보건복지부는 수요기반 예산 편성을 하고 인력 배치 체계를 정교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2	대체인력 지원 사업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예산 집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2631-32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5년에 대체인력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기준 및 제도개선을 위해 편성된 연구용역비 1억원 중 7,950만원이 ‘돌봄인력 자격체계 개선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위해 집행되었고, 대체인력 사업 모니터링을 위해 편성된 예산 2,000만원 중 약 600만원이 ‘처우개선위원회 수당’ 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관련 비용으로 집행되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백을 방지하고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된 연구용역과 위원회 수당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대체인력 지원 예산을 당초 편성 목적 및 사업 범위에 맞게 집행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연구 및 위원회 운영 등 별도의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은 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3	통합돌봄서비스 관계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2631-33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연계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데, 2025년 교육 수강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관계기관(치매안심센터,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건보공단, 병·의원 등) 종사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 2025년 교육과정 수강 현황 > (단위: 명) <table>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지자체 공무원</th> <th colspan="3">관계기관 종사자</th> <th rowspan="2">합 계</th> </tr> <tr> <th>건보공단</th> <th>유관기관¹⁾</th> <th>병·의원 등 의료인력</th> </tr> <tr> <td>수강인원</td> <td>10,121</td> <td>6</td> <td>2,394</td> <td>75</td> <td>12,596</td> </tr> </table> 주1) 유관기관: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구분	지자체 공무원	관계기관 종사자			합 계	건보공단	유관기관 ¹⁾	병·의원 등 의료인력	수강인원	10,121	6	2,394	75	12,596
		구분	지자체 공무원	관계기관 종사자							합 계												
건보공단	유관기관 ¹⁾			병·의원 등 의료인력																			
수강인원	10,121	6	2,394	75	12,596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건보공단·장기요양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교육·훈련 체계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4	재택의료 참여기관 및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서비스 체계 구축(2631-33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6년 6월 기준 재택의료* 참여기관이 전국 463개소에 불과하고, 88개 시·군·구는 참여기관이 1개소에 불과하며, 기관당 평균 31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상자 증가 시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이 더욱 가증될 우려가 큼. * 재택의료: 의사(한의사 포함)를 중심으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루어 통합돌봄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및 상담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 기관당 평균 관리 인원(31명): 재택의료 서비스 이용자(14,632명, 2026.5.기준) ÷ 참여기관 수(463개) ○ 또한 2026년 7월 기준 27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재택의료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서비스 공급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의 전국적 제공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5	환수율 저하와 부정 규모 확대에 따른 복지급여 사후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복지급여 사후관리(2632-31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현재 사후관리 체계는 적발 중심 구조에 머물고 있을 뿐 아니라 환수성과 저하와 제도 간 연계 부족, 그리고 신고포상금 제도 재원 제약에 따른 운영 한계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등 재정통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 또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요구 규모의 절대다수는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정산 이후 기한 내 미반납분 등 예산 집행률 관리 및 행정 지연에 기인한 기관 간 회계 문제로 확인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적발건수 및 재발방지 등 실질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환수율·환수액을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등 환수 중심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고위험 분야 집중 점검 등 위험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 보건복지부는 신고포상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 보건복지부는 정부합동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요구 규모 축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미반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반복적인 반납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6	차별화된 사업계획 마련 등 관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2639-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별·서비스별 실적의 편차가 크고, 단순 서비스 제공 건수 중심의 지표로는 실제 위험 감소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을 신설하면서 사업 차별성과 지방비 부담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실제 지원 대상자는 당초 계획한 4,977명에 크게 미달하는 2,081명에 그쳤으며, 예산액 39억 1,400만원 중 6억 1,200만원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연령별 고독사 위험요인 및 대상자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별화된 사업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규모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할 것 ○ 보건복지부는 광역 단위 전문지원센터 설치 등 전문적 전달체계 구축을 통하여 고독사 예방관리체계구축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제고할 것 ○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인구·위험도·수요를 반영한 자원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재연결·위기완화·지속관리 등 결과 중심의 공통 성과지표 및 부진지역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7	편성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2640-31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예산액 8억 5,300만원 중 6억 2,100만원을 별도 정보화사업의 잔금 지급을 위하여 전용하였고, 9,700만원을 다른 사업의 감리비로 변경하여 당초 편성 목적대로 집행된 금액은 1억 3,500만원(15.8%)에 그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정보화 사업의 종료 시점과 잔여 소요액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다른 사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반복적인 전용·내역변경을 최소화하여 국회가 확정된 예산의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8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반납금 체납 의료기관에 대한 채권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2740-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과지급에 따른 미환수 채권(' 26. 8. 2. 기준 11억 3,800만원 체납 중)에 대하여 법정 독촉이 지연되거나 강제 이행 절차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국가채권 관리법」상 채권 관리가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반납금 체납 의료기관에 대하여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독촉, 집행권원 취득 및 필요한 강제이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향후 발생하는 미환수액도 납부기한 경과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법정기한 내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채권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		
69	법률을 위반한 공중보건장학생 의무복무 면제 처리 중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2750-303)	주의,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공중보건장학생은 공공보건업무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근거법률인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위한 특례법」을 위반하여 일부 공중보건장학생의 의무복무를 면제해주고 있어, 의무복무 이행자들과의 형평성 및 제도의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 없는 공중보건장학생 의무복무 면제 조치를 중단하고, 필요한 예외가 있다면 법률에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며, 특히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의무복무 제도 전반의 관리원칙을 정비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제도개선) ○ 보건복지부는 법률을 위반한 공중보건장학생 의무복무 면제 처리를 즉시 중단할 것(주의) ○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생 의무복무 면제가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과 심사절차를 명확히 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0	법령을 준수하여 공중보건장학금 납부기한을 적용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2750-303)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무복무 면제 등으로 장학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공중보건장학생에게 법적근거 없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상 기한보다 긴 납부기한을 적용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법령을 준수하여 적시적인 공중보건장학생 반환금 환수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7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과제 추진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R&D)(3031-38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확정된 사업 구조 및 계획과는 달리, 일부 예산을 활용하여 별도의 신규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이는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제도 운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예정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재검토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적정하게 반영함으로써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 추진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2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R&D)(3031-44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이 시작된 2021년부터의 실적을 보면, 선행 연구성과가 후속 연구개발 단계로 연계되는 실적이 저조하고, 2026년까지 ‘치료제 1건 개발’이라는 목표 달성 가능성도 쉽지 않아 보임. - 2021년~2025년 동안 신규과제 201건을 지원하였고, 이중 119건 과제가 종료되었으나, 선행 내역사업이 후행 단계로 연계된 과제는 5건에 그침 - 2026년 5월 기준 재생의료 치료제 제품화를 위한 임상시험 진행과제 17건 중 가장 앞선 과제도 임상 2상 단계 1건이고, 대부분 임상 1상 또는 1/2a상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단계별 연구성과가 후속 연구개발 단계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과제의 발굴·선정 및 후속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치료제 개발 목표의 달성가능성을 과제별로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 체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3	참여자 모집 제고 등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3031-52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핵심 성과 요소인 참여자 모집 실적을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 참여자 모집실적 연도별 목표 및 실적 > (단위: 만명)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4년</th><th colspan="2">2025년</th><th colspan="2">2026년 7월 기준</th></tr><tr><th>모집 목표</th><th>모집 실적</th><th>모집 목표</th><th>모집 실적</th><th>모집 목표</th><th>모집 실적</th></tr><tr><td>모집인원</td><td>1.9</td><td>0.01</td><td>19.1</td><td>12.1</td><td>19.2</td><td>8.3</td></tr></table> ○ 또한, 연구원·예산·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협약변경도 빈번하게 발생하였음(협약 변경 건수: 2025년 810건, 2026년 4월 기준 378건)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7월 기준		모집 목표	모집 실적	모집 목표	모집 실적	모집 목표	모집 실적	모집인원	1.9	0.01	19.1	12.1	19.2	8.3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7월 기준																										
모집 목표	모집 실적		모집 목표	모집 실적	모집 목표	모집 실적																											
모집인원	1.9	0.01	19.1	12.1	19.2	8.3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77.2만명 확보 목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 모집기관에 대한 인력·홍보 지원과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모집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협약변경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잦은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4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시급성 등 객관적 입증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AI 모델을 활용한 항체 바이오베터 개발 및 실증(R&D)(3031-625) 일반회계 -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R&D)(3031-624) 일반회계 - 바이오헬스 전문인력양성 기반구축(3033-506) 일반회계 - 의료데이터중심병원지원(3039-311) *첨단의료지원관 소관 일반회계 - 제약산업 육성 지원(3039-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들은 AI 관련 연구개발(R&D)·인프라 구축·교육 사업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약 140억원이 신규 내역 또는 증액으로 편성되었음. *항체 바이오베터 33억원, K-AI 신약개발 21억 8,400만원 / 의료AI직무교육 24억원, 의료AI데이터 활용 플랫폼 24억 3,400만원 /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37억 1,000만원 ○ 해당 사업들은 연구개발·인프라 구축·교육 등 중장기 성격의 사업으로서 본예산 편성을 통해 충분한 사업 검토와 우선순위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들이었으나, 추경 편성 요건인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채 편성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연구개발·교육·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본예산을 통해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급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5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3033-5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에는 최근 5년간 약 139억원이 투입됐으나 데이터 활용 실적이 충분하지 않고. 데이터 제공 참여기관 또한 13개 기관 등 일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데이터의 다양성과 활용 확대에도 한계가 있음. - 데이터 제공 실적: 2022년(29회), 2023년(51회), 2024년(45회), 2025년(63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데이터 신청·제공이 저조한 원인과 미승인 사유를 분석하여 신청 절차와 연구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연구자 수요가 높은 데이터 확보와 국·공립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플랫폼의 데이터 다양성과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6	의료기관 참여 확대 및 플랫폼 고도화 등 플랫폼 활용도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정보화)(3034-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의 의료기관 참여가 상급종합병원에 편중되어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서비스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고, 가입자 증가에 비해 실제 진료정보 활용 실적은 낮은 수준임. - 의료기관 참여율 현황(2026.4.기준): 상급종합병원(100%), 종합병원(33.9%), 병원(0.8%), 의원(3.2%) - 플랫폼 가입 및 활용 현황(2025년): 가입자 수(160,019명), 진료정보 다운로드 수(40,326건), 진료정보 공유 수(12,760건)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과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인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 기능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여 실제 이용실적이 증가하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7	연계 의료기관 수 확대 및 지방소재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원격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3034-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원격중환자실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는 의료기관 수가 적어 지역의료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방 소재 의료기관의 참여 확대가 충분하지 않음. - 기존 인천권은 연계 의료기관이 1개소, 경기권은 3개소에 불과하며, 2025년 비대면 협진 실적도 각각 77건과 163건으로 연계기관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원격 중환자실 비대면 협진 실적> (단위: 건) <table> <tr> <th rowspan="2">권역</th> <th rowspan="2">거점병원</th> <th rowspan="2">연계 의료기관</th> <th colspan="2">비대면 협진 실적</th> </tr> <tr> <th>2024</th> <th>2025</th> </tr> <tr> <td>인천권</td> <td>인하대 병원</td> <td>인천의료원</td> <td>13</td> <td>77</td> </tr> <tr> <td>경기권</td> <td>분당서울대병원</td> <td>안성병원, 이천병원, 포천병원</td> <td>152</td> <td>163</td> </tr> </table>							권역	거점병원	연계 의료기관	비대면 협진 실적		2024	2025	인천권	인하대 병원	인천의료원	13	77	경기권	분당서울대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포천병원	152	163
		권역	거점병원	연계 의료기관	비대면 협진 실적																					
					2024	2025																				
인천권	인하대 병원	인천의료원	13	77																						
경기권	분당서울대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포천병원	152	163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연계 의료기관 확대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특히 지방의료원 등 지역 소재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비대면 협진 실적, 치료성과 및 진료의 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8	원외탕전실 품질관리·평가 인증 및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한의 의료기관 참여율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의약산업육성(3234-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원외탕전실 인증기관은 2021년 10개소에서 2025년 25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인증률이 전체 127개소의 19.7%에 불과하고, 탕전실 조제한약 품질 모니터링 참여기관도 2024년 기준 116개소로 전체 탕전실 2,219개소의 5.2%에 그치고 있음. * 원외탕전실(공동이용탕전실):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여 다수의 한의원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며,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증 의무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및 강구할 것		
79	한의약혁신기술 개발(R&D) 지원과제 성과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의약혁신기술개발(R&D)(3237-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연구개발 예산은 2022년 142억원에서 2024년 197억 3,000만원으로 지속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연구성과는 SCI 논문 게재 건수 기준 89건에서 86건으로 감소하였고, 등록특허 건수도 2023년 3건, 2024년 2건에 그치는 등 연구성과 확대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일부 내역사업은 신규 연구과제 공모 경쟁률도 상대적으로 낮아 우수과제 발굴과 선정 과정의 경쟁성 확보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 경쟁성과 우수성을 높이고, 연구비 투입 대비 논문·특허·임상근거 창출 및 실제 의료현장 활용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성과가 저조한 내역사업은 과제 구성과 지원방식을 재점검하고 후속지원 여부를 성과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0	권역장애인구강 진료센터 비급여진료비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3344-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내역사업의 비급여진료비 예산액은 46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환자 중 비급여진료비를 감면받은 인원은 편성 기준 인원(41,495명)보다 5,395명이 적어 비급여진료비의 17.6%에 해당하는 8억 1,200만원이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진료비 지원 인원 및 단가를 면밀하게 추계하여 과도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81	지역장애인구강 진료센터 시범사업 예산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3344-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2권역 3개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범사업(2025년 9월~ 2026년 3월)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 시범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현재 비예산사업으로 수행 중임. ○ 현재와 같이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는 경우 기관 자체 인력과 운영비(비급여진료비 포함)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본 사업의 정식 도입시 반영되어야 할 실제 운영 비용, 필요한 인프라 규모, 환자 수요 및 운영상 제약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참고로, 시범 지역센터를 6개로 확대하고 비급여진료비 1억 8,200만원과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7회계연도에 2억 1,200만원을 재정당국에 요청하는 한편,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임.		
		시정요구사항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집행기반을 마련하고 내실있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비 추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단계에서도 최소한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2	권역장애인구강 진료센터 전담인력 처우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구강진료센터(3344-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장애인에 대한 치과 진료는 비장애인 진료 대비 외래진료 시간은 2.3배, 전신마취진료는 9.3배, 진료난이도 4.0배, 육체피로도 4.1배, 정신적 피로도는 3.9배로 나타나는 등 업무난이도가 높아서 중앙 및 권역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담 치과의사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등록 장애인 수 대비 진료 인원 수 및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진료 수요를 고려할 때 중앙 및 권역센터가 충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진료에 원활하게 대응하기에는 처우개선이 미흡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향후 증가하는 장애인 구강 진료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건비 현실화 등 전담인력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3	용역계약 체결·관리 담당자에 대한 적정한 징계조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3344-308)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계약 기간을 2차례 연장하였음. ○ 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유치 희망지역 타당성 조사”의 내용이 추가된 구체적 내용이 부재하고 2차례 총 5개월을 연장하였으나 연구용역 비용이 당초 계약된 1억 9천만원에서 변동 없이 진행되었음. - 국가계약법과 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업 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한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당초 과업지시서에 없던 과업이 추가되고, 2차례, 총 5개월을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변경을 통보하였음에도 계약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됨. ○ 또한, 첫 번째 용역이 종료 3개월 후 기존 용역을 연장하며 과업을 추가했던 내용과 유사한 “후보지 선정 평가지표 및 기준 마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용역도 연장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는 상황임 ○ 유사·중복 용역을 반복하면서 사업 추진을 계속 뒤로 미룬다면 연구용역이 사업 추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업 결정을 미루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용역계약의 기간 및 내용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과 계약상대자의 부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약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용역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4	성과지표 개편 방안 마련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치의학 의료기술 연구개발(R&D)(3344-418)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세부사업의 성과목표는 ‘보건의료실용화지수’ 이고, 그 측정산식은 (임상시험 승인건수 × 0.7) + (기술이전건수 × 1.0) +(품목허가건수 × 1.3)임. ○ 2025년까지 종료된 4개 내역사업에서 임상시험승인 1건, 기술이전건수 4건, 품목허가 3건에 그치고 있고, 2023년부터 시작된 치의학 데이터 생성 기술개발 내역사업의 4개 세부과제에서는 현재까지 임상시험승인, 기술이전 및 품목허가 실적이 없는 상황임에도 2025년도 성과계획서상 보건의료실용화지수의 목표지수인 106을 넘어 106.7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성과지표를 SCI(E) 논문지수 등으로 개편하여 논문의 표준화된 순위정보 영향력 지수와 논문 SCI 발표 건수 등을 활용하여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85	사업 추진절차 보완 및 연차별 예산 편성 등의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3345-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사업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부족 및 연도내 집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예산편성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 지연 및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의 추진절차 보완 및 연차별 예산편성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의 준비도와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예산 교부 이후에도 실집행률을 지속 점검하며, 반복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6	각 시설별 기능보강 수요 및 지원 규모의 정밀한 추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3345-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은 내역변경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현액이 총 55억 600만원으로 확대된 반면,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내역사업은 내역변경 및 이·전용으로 인해 당초 편성된 50억 3,800만원에서 31억 2,400만원으로 감액되는 등 각 내역사업 간 연례적인 내역변경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의 예산편성 시 각 시설별 기능보강 수요 및 지원 규모를 보다 정밀하게 추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7	비자의입원 환자의 전원 및 지역사회 복귀 실태 점검 및 사업 간 연계 · 조정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3345-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울산 반구대병원 폐원에 따른 전원 과정에서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별도의 재평가 없이 입원이 지속되어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과 불필요한 비자의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려는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비자의입원 환자의 전원 및 지역사회 복귀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체계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8	부실한 사업설계 및 과다예산 편성 시정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예산 배분기준 마련 및 재배정 절차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345-33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5년 추경에서 126억 4,600만원을 감액했음에도 불용이 발생하였고, 반면에 기초지방자치단체 229곳 중 170곳(74.2%)에서는 예산 조기소진으로 신규 신청의 접수가 중단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부실한 사업설계 및 과다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보건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예산 증·감액 시 지역별 신청 추이와 예산소진 현황을 반영한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 조기 소진 지역에 대한 재배정 절차를 정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9	정교한 수요 예측 체계를 마련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345-33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실제 수요 및 집행가능성을 초과한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인하여 실집행 부진 및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심리상당 바우처에 대한 실제 신청 수요, 지역별 상담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수요 예측 체계를 마련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0	상담서비스의 충분한 제공과 품질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345-33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심리상담 바우처의 완료율 및 평균 사용횟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1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단계적 지원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43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 시점 및 규모, 사업 참여 가능성 등 주요 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지원 인원과 예산 규모가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으며, 그 결과 추경예산을 통한 대규모 감액, 불용예산액의 연도말 이용, 당초 목표 대비 실적 저조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 및 재정 투입의 성과가 부진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향후 정책대상자의 참여 규모나 사업수행 여건이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업의 경우, 과다한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		
92	연도말 연구용역 발주 지양,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강화 및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43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보건의료인력 적정수급관리 연구’ 사업은 연도 중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련 업무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에서 수행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말 예산편성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음. ○ 내역사업인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실집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보조금 20억원을 전액 교부하여 실집행률이 0%에 그침. ○ 내내역사업인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은 지원금이 지도전문의 수당에 편중되어 전공의 교육에 필요한 항목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칸막이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연도말 집행잔액을 활용한 연구용역 발주를 지양하고,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와 지침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3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적용 관련 정확한 재정 추계를 토대로 급여대상·참여 기준 정립 및 간병인력 관련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4333-32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1차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월 간병비 300만원, 본인부담률 30% 가정 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 3,700억원 소요 추계(보건복지부) ○ 그러나 참여기관 선정과 중증도별 급여대상 기준이 불명확하고 간병인력 수급 대책도 미흡하여 현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재정추계를 토대로 급여대상과 참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병인력 확보 및 간병인 쏠림 현상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4	지역필수의사 확보 및 실집행 부진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4333-35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5년 신규 추진 과정에서 사업 준비절차 및 전문의 채용 지연 등으로 지역필수의사 확보와 예산의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였음. * 목표 96명 중 90명 모집('25.12말 기준), 90명 중 27명(30%)이 4분기 이후 근무 개시 ** 실집행내역 : 교부액 13억 5,200만원 중 7억 6,100만원(56.3%) 실집행 ○ 또한, 동 사업은 지역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지역필수의사 근무지원’ 내역사업과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권역별 운영비’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지역필수의사 근무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2025년 9월 보조금 2차 교부 당시 의사 모집 지연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음에도 잔여보조금을 전액 교부했고, ‘권역별 운영비’ 내역사업의 경우 한 차례에 전액 교부하였는데, 이는 실집행가능성을 점검해 분할교부하도록 한 보조금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사업 준비도와 실제 집행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보조금 교부 시에는 연내 실집행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며 실제 집행 수요에 따라 분할교부하고, 예산 교부 이후에도 사업별·지자체별 실집행률을 지속점검하며,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와 실집행 부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5	사전 준비를 통한 예산편성 및 실행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4337-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49억 8,7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 ○ 동 사업은 사업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연도 중 집행방안을 변경하여 11월이 되어서야 보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실행액이 1차 교부액에도 미치지 아니하여 2차 교부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12월에 미교부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등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신규 보조사업 편성 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확대에 앞서 고액배상 특화보험의 실제 가입수요와 보험료 수준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대상과 사업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며, 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6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법정 기준 준수,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및 관련 수입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4931-300) 국민건강증진기금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493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등은 일반회계·국민건강증진기금이 각각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6%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일반회계 지원율이 연례적으로 11~12%대에 그쳐 최근 6년간(2020~2025년) 법정 기준 미달 금액이 9조 원을 넘음. *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일반회계 지원율, 법정 기준 미달금액 : ('20) 11.5%, 1조 6,014억원, ('21) 11.5%, 1조 6,532억원, ('22) 11.9%, 1조 5,013억원, ('23) 12.0%, 1조 5,161억원, ('24) 12.1%, 1조 5,807억원, ('25) 12.1%, 1조 6,379억원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하되,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한도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5년도 담배부담금 수입이 예상액 대비 감소하여 불용액(1,180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대비 지원율은 61.1%로 하락하였으며, 보험료 예상수입액 대비 지원율은 2.1%에 그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금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 국고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한도로 인해 법정 지원율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와 재원 구조를 재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7	계약변경을 통한 사업추진 지양 및 관련 제도 개선 협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험정책사업관리(4931-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국민지원금 선별지급 지원’ 내역사업 집행과정에서 경쟁입찰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 추진 중이던 사업들의 계약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상담인력을 채용하고 전산인프라를 확충하였는데, 이는 국가계약법 상 경쟁입찰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경쟁입찰 원칙과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긴급성을 이유로 한 계약변경 방식의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긴급사업에도 경쟁성과 신속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계약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협의할 것		
98	집행잔액을 통한 과거 미지급금 상계 중단 및 미지급금 정산 내역사업을 통한 단계적 미지급금 해소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차상위계층 지원(4931-30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 예산이 부족한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여 부족분을 충당 하는 한편, 동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 건강보험 재정으로 先 충당한 금액, 즉 미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음. 이에 따라 2025년에도 306억원의 집행잔액을 미지급금과 상계하여 총 2,242억원의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황임. ○ 당해연도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보험료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잔액을 이처럼 과거 미지급금 정산에 활용하는 관행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2026년부터 별도의 ‘미지급금 정산’ 내역사업이 신설된만큼 집행잔액을 통한 상계 방식이 아닌 계획적인 정산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미지급금 정산’ 내역사업을 통해 중장기 정산 계획을 수립하고 미지 급금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과거 미지급금 과 상계하는 관행은 중단하여 예산이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9	공무원·교원 건강보험료 추계 정확성 제고 및 회계연도 독립 원칙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4934-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2024년 12월분 건강보험료 부족액 30억원을 2025회계연도 예산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처럼 전년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부족분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국회가 확정된 연도별 예산규모와 재정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0~2023년 동안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12월분 보험료까지 지급해왔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공무원·교원 건강보험료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도 중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전용이나 예비비 등 적법한 재정수단을 우선 활용하여 당해 회계연도 비용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100	정책연구용역 집행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책연구개발(7034-30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임에도 연구용역 발주가 하반기와 연말에 집중되면서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6년 중 2024년을 제외하고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연구과제 수요조사와 선정절차를 조기에 추진하고, 계약기간을 고려한 연간 발주계획을 마련하여 연말 신규발주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정책연구용역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1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미처분잉여금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7035-305)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동 사업 1년 예산의 84%에 해당하는 미처분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타공공기관이 과다한 미처분잉여금을 보유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을 유발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미처분잉여금 및 출연금 집행잔액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처분잉여금이 적정 규모로 관리될 때까지 출연금 잔액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102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회계에서 국민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8420-84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국가가 「국민연금법」 제87조*에 따라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00억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 「국민연금법」 제87조(국고 부담) 국가는 매년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사업을 관리·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4년간은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가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었고, 1992년부터는 국민연금기금지출계획으로 수립하되 그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부담하여왔는데, 2007년까지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38~66.7%에 대하여 일반회계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일반회계 지원율이 5%로 급감하였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100억원(정액)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그 지원율은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약 1.75%에 불과한 상황임. * (25결산)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5,720억 5,700만원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인 동시에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인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3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지원 체계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154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 참여 인원이 목표 600명 대비 481명(80.2%)으로 여전히 목표에 미달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재가 장애인까지 사업 대상이 확대되어 자립지원 수요가 다양해졌음에도 2022년부터 활동지원급여, 주거환경 조성, 보조기기, 의료 지원 등 주요 지원 항목과 수준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음. - 2027년도 본 사업 전환을 앞두고 시설 거주 장애인에서 재가 장애인 등으로 확대되었고, 이들은 생활환경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지원 항목과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시설 거주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그리고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 특성과 생활 여건, 대상자별 자립지원 수요를 내년도 사업 운영에 반영하고 지원 항목과 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4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수행인력의 실비성 비용 지원 및 고용구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2134-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인력인 생활지원사 등에 대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 및 통신 등 실비성 비용에 대한 지원이 지방비 지원사항으로 운영되어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고용 구조 또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수행 인력인 생활지원사 등에 대하여 교통비·통신비 등의 실비성 비용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인력 운영방식 등 고용 구조 개선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5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축 지원단가 현실화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노인요양시설 확충(223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3년 11.8%, 2024년 29.9%, 2025년 19.1%로 최근 3년간 3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동 시설의 신축 지원단가(198만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노유자시설의 2023년~2025년 평균 공사비(약 398만원/㎡)의 약 55%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사업의 장기간 동결된 건축 지원단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선정 단계에서 부지·지방비 확보와 설계·인허가 진행상황 등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 이후 사업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6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집행 가능성 확인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305)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실집행 기준으로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역사업은 72억 4,800만원이 불용되어 추경 증액분(97억 100만원)의 74.7%가 미집행되었고, ‘긴급돌봄 지원사업’ 내역사업의 불용액 8억 1,400만원은 추경 증액분 6억 4,800만원을 초과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지방비 매칭 확보 가능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 중에도 지역별 집행률을 지속 점검하여 부진 지역의 교부액을 조정하는 등 실집행 중심 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추경 증액분의 집행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7	일상돌봄서비스 수요 대응형 예산·서비스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2635-305)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과 관련하여, 현재 일상돌봄서비스의 수요 증 가 속도에 비해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체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의 안정성 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지역별 서비스 공급·이용 격차가 나타나며, 제공기관 중심의 품질관리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서비스의 수요 변동을 반영한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체계를 개 선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며,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접근성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8	사전 수요분석 및 기존 전달체계 연계를 통한 사업설계의 적정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2639-30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고독사예방 사례관리’ 사업의 경우 예산안의 국회 제출(2024. 9. 2.) 이후 1차 수요조사(2024. 9. 11.)가 실시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채용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114명 계획 대비 실제 채용 인원은 48명에 그쳤고, 이에 예산액 10억 2,000만원 중 7억 7,300만원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지원 사업의 편성시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설명자료에 명시할 것 ○ 보건복지부는 ‘고독사예방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 규모와 지역별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복지 전달체계와의 역할 조정 및 연계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방식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9	보건소 건립 지원 및 사업 대상 확대 필요 등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자율)(273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현행 지원 대상 보건소는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보건지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 지역에 한정됨. ○ 정부의 5극 3특 지역 의료체계 구축 기조에 발 맞춰,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완성의 필요성에 따라 보건소 사업의 국비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5극 3특 지역 의료체계 구축 기조에 발맞춰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완성을 위해 고령인구 비율, 보건의료 접근성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0	지역보건의료기관 신·증축 사업 적정성 검토 강화 필요 등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자율)(2732-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2025년 동 사업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실집행된 현황을 살펴보면, 국비 지원액 371억 8,200만원 중 집행액은 247억 6,2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66.6%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실집행률도 70% 미만에 불과함. ○ 시설 신·증축 부문에서 기관 유형별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0%), 일반보건지소(6.1%), 보건소/보건의료원(39.9%), 건강증진형보건지소(47.4%)를 중심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함. ○ 사업 선정 단계의 사전검토 미흡으로 사업 포기와 재정낭비 우려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 선정 전 부지·행정절차·지방비·구조안전성 등 실제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 신청 단계에서 부지 확보, 도시계획·인허가, 지방비 확보, 구조안전성 및 총사업비 등 실제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선정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과 사업 조정을 통해 연례적인 이월·불용 및 사업 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1	응급관리요원의 적정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2831-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응급관리요원의 1인당 관리장비가 2021년 168대에서 2025년 362대로 증가했으나 서비스 확대에 비하여 응급관리요원 확충과 처우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인력배치 기준 또한 미흡하며,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교통·통신·출장비 등의 지원도 지역별 편차가 있어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장비 수뿐 아니라 실제 업무량을 반영하여 응급관리요원 배치기준을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하며 교통·통신·출장비 등에 대한 공통 지원기준과 고용·보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2	국립중앙 의료원의 위법한 민간 재대여 시정 및 국유재산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건물대여료(51-512)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국립중앙의료원은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재대여(전대)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민간에 재대여하고, 재대여 수익(2025년 기준 28억 1,500만원)은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중앙의료원의 자체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어, 「국유재산법」을 위반하고 국고 손실을 야기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민간 재대여와 관련하여, 재대여 계약의 즉시종료 등 관련 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국유재산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할 것		
113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센터 지원의 사업 내용 변화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1563-309)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 관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의 건립·지정이 대부분 완료되면서 운영비 및 공공재활프로그램 지원 등 운영 중심으로 사업 내용이 변화하였으나, 2025년 성과지표는 여전히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정률’로 설정되어 있어 현재 사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건립비 국고 교부가 종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직접적인 건립비 지원이 제외되었고, 2025년에는 세부사업 명칭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건립사업’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지원’으로 변경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건립 진행 상황 중심의 현행 성과지표를 재검토하고,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의 서비스 제공 실적,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성과, 이용자 접근성 및 서비스 질 개선 효과 등 현재 사업 내용과 정책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4	치매안심센터 법정 전문인력 확충 및 서비스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치매관리체계구축(2234-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중 법정 인력기준(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 심리사 각각 1명 이상)을 충족한 곳은 99개소(38.7%)에 불과하며, 특히 농촌지역은 24.1%로 도시지역 47.6%의 절반 수준으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의 성과를 실제 전문인력 충원 및 서비스 제공 수준까지 연계 관리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지역·지역별 인력 부족 원인을 분석하여 법정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충원·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5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치매관리체계구축(2234-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내역사업은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중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1억 4,700만원이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이 4.5%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 준비도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추진상황을 단계별로 관리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6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노인건강관리(22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개안수술비 지원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나 매년 예산 부족으로 연도 중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고 있음. * 2023년 7월, 2024년 8월, 2025년 7월 신청 마감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노인 개안수술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 추이와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7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의 수요예측 실패 원인 분석 및 사전 수요검증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노인건강관리(2235-304)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사업 참여 지자체가 2024년 20개소(8.8%), 2025년 35개소(15.5%)로 2년 연속 저조하고, 지자체 참여 가능성과 현장 수요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편성되어 2027년부터 폐지 예정임(예산안 미편성 예정).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의 수요예측 실패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향후 유사한 신규 사업 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 등 실제 현장 수요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8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신속한 확충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2735-30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는 도시지역 시·구당 생활권 중심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전국 250개소 이상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5년 말 기준 164개소에 그침. ○ 동 세부사업의 계획액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6년 계획액은 23억 9,400만원으로 2021년(127억 100만원) 대비 약 18.9% 수준에 불과2026년 지자체 신청액 67억 7,600만원 중 23억 9,400만원만 반영돼 지역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사업 집행실적 개선을 통해 실행행위를 개선하고 지자체 수요와 중장기 설치목표를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는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동일한 생활권 내에서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9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건강검진사업운영(3334-30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일반건강검진지원’ 내역사업은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2025년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지원사업 대상자는 69만 9,730명, 수검자는 26만 9,871명으로서, 수검률은 2022년 이후 소폭 상승 추세이기는 하나 연례적으로 수검률이 30%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상병 분포를 고려하여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함으로써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수검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0	심리부검 동의율 제고,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 개선 및 상담전화 2센터 위탁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3346-302)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자살원인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의 시행실적과 청년 소외계층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의 상담실적이 저조하고, 법률상 국가가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를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의 심리부담과 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완화하여 심리부검 동의율을 높이고, 청년 소외계층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의 낮은 예약·상담 실적의 원인을 분석하여 상담방식과 운영체계를 개선하며,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의 법적 위탁근거와 적정 예산 비목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1	전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연금기금 - 노후준비서비스(7432-440)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복지서비스를 국민연금기금으로 계속 부담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2015년 법 개정으로 서비스 대상이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으나 사업비는 계속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음. - 국회도 2023·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했음에도 2025년에도 가입자의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음. ○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은 2010년 이후 100억원 정액으로 고정되어 지원율이 2021년 1.90%에서 2025년 1.75%로 지속 하락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및 수익 극대화 등 운용원칙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2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국내·국외업무 여비 적정 소요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연금기금 -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7432-44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수익을 극대화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려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491억 1,800만원 중 483억 200만원이 집행되었고, 8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최근 4년간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필요한 국내여비·국외업무여비의 당초 계획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약 144.9%로 나타나 매년 실제 소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자체 계획변경에 의존하는 경우 국회가 심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표] 최근 4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여비 지출계획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 <th rowspan="3">구분</th> <th colspan="4">국내여비</th> <th colspan="4">국외업무여비</th> </tr> <tr> <th colspan="2">계획액</th> <th rowspan="2">지출액 (B)</th> <th rowspan="2">비율 (B/A)</th> <th colspan="2">계획액</th> <th rowspan="2">지출액 (B)</th> <th rowspan="2">비율 (B/A)</th> </tr> <tr> <th>당초(A)</th> <th>수정</th> <th>당초(A)</th> <th>수정</th> </tr> <tr> <td>계</td> <td>1,002</td> <td>1,697</td> <td>1,565</td> <td>156.2</td> <td>4,075</td> <td>6,253</td> <td>5,791</td> <td>142.1</td> </tr> <tr> <td>25결산</td> <td>278</td> <td>535</td> <td>430</td> <td>154.7</td> <td>1,242</td> <td>1,834</td> <td>1,832</td> <td>147.5</td> </tr> <tr> <td>24결산</td> <td>278</td> <td>489</td> <td>483</td> <td>173.7</td> <td>1,346</td> <td>1,841</td> <td>1,778</td> <td>132.1</td> </tr> <tr> <td>23결산</td> <td>208</td> <td>409</td> <td>391</td> <td>188.0</td> <td>708</td> <td>1,379</td> <td>1,087</td> <td>153.5</td> </tr> <tr> <td>22결산</td> <td>238</td> <td>264</td> <td>261</td> <td>109.7</td> <td>779</td> <td>1,199</td> <td>1,094</td> <td>140.4</td> </tr> </table>									구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계획액		지출액 (B)	비율 (B/A)	계획액		지출액 (B)	비율 (B/A)	당초(A)	수정	당초(A)	수정	계	1,002	1,697	1,565	156.2	4,075	6,253	5,791	142.1	25결산	278	535	430	154.7	1,242	1,834	1,832	147.5	24결산	278	489	483	173.7	1,346	1,841	1,778	132.1	23결산	208	409	391	188.0	708	1,379	1,087	153.5	22결산	238	264	261	109.7	779	1,199	1,094	140.4
		구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계획액			지출액 (B)	비율 (B/A)	계획액		지출액 (B)	비율 (B/A)																																																																					
당초(A)	수정				당초(A)	수정																																																																							
계	1,002	1,697	1,565	156.2	4,075	6,253	5,791	142.1																																																																					
25결산	278	535	430	154.7	1,242	1,834	1,832	147.5																																																																					
24결산	278	489	483	173.7	1,346	1,841	1,778	132.1																																																																					
23결산	208	409	391	188.0	708	1,379	1,087	153.5																																																																					
22결산	238	264	261	109.7	779	1,199	1,094	140.4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최근 집행실적,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출장수요 등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업비 중 국내·국외업무여비의 적정 소요를 사전에 산정하고, 반복적인 자체 계획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3	응급의료 전용헬기 (닥터헬기) 권역 확대·유지를 위한 실질적 사업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2832-31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내역사업은 2025회계연도에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공모 미신청 등으로 37억원이 불용되는 등 현행 지원단가로는 닥터헬기의 신규 사업자와 운영기관의 참여를 충분히 유인하기 어려우며, 헬기 설치 권역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권역의 유지에 차질이 어려울 경우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실제 헬기 도입가격과 금융비용, 인건비·정비비·유류비 등 운영비 상승을 반영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신규 배치와 기존 권역 계약갱신 과정에서 사업자 미확보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과 중장기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4	지역·응급의료 지원사업의 현장 참여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2832-311)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사업을 포함한 지역·응급의료 지원사업의 공모 미달, 사업 포기, 인력 부족 및 지방비 미매칭 등으로 불용·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며,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 등 일부 사업은 현장 참여 저조가 확인됐음에도 편성 및 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상황임. < 주요 불용·이월 사례 > -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사업의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중증응급환자 전담 구급차(MICU) 미신청·사업포기로 인한 39.8억원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응급의료기금 2833-303) 사업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공모 저조로 인한 75.2억원 -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일반회계 2740-315) 사업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에 대한 지방비 미매칭으로 인한 42.5억원 -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750-301) 사업의 의료·분만취약지 공모 저조로 인한 11.5억원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사업 등 공모 미달 또는 사업 포기가 발생한 지역·응급의료 지원사업의 미참여 원인을 전수조사하고, 의료인력·지방비 부담·지원단가 등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국고보조율·인력기준·운영비 지원방식 등 사업구조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5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확산 및 지역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 필요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2833-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이 소아의료가 부족한 지역보다 소아외래 자 체충족률이 높은 지역에 집중되거나 이미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 지역에 추가 지정되 는 등, 새로운 지역으로의 확산이 더디며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역적 확산을 위해 단순히 지정기관 수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시간대별 소아환자 이용수요와 의료기관의 인력 부담을 분석하 는 한편, 평일과 주말·공휴일의 진료시간을 세분화해 시간대별 환자 수요를 측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심야시간 가산 등 시간대별 차등수가와 운영 시간 기준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6	소아환자 상담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소방청과의 업무분담 명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2833-303)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소아전문상담센터 시범사업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 적·제도적 환경이 변화된 이후에도 부처 간 기능 조정이나 협의 없이 지속적으로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소방청과의 협의를 통해 소아전문상담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소아 관련 상담서비스 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7	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 지정 지연 및 전담전문의 채용 부진 문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2833-303)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내역사업인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지연, 전담전문의 채용 부진 문제 및 지역별 소아응급의료 공급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과 인력 충원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가능한 실질적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인력 충원 계획을 보고할 것 ○ 보건복지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부족 지역에 신규 기관을 조속히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원 규모 현실화 등 기존 사업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8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실적 부진 개선을 위한 적정 예산 확보 및 파견 지역 확대 등 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2833-31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사업은 의료인력 파견 수요 인원에 비해 실 제 간호사 파견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 수요 및 미충족 수요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간호사 외에 의사와 응급구조사, 임상병리 사 등 다양한 인력군을 대상으로 파견을 확대하거나, 지역필수의사제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하여 취약지 의료기관의 자체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29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실적 부진 문제 개선 및 구체적인 원격협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2833-316)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및 보 상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원격협진망 실제 활용 및 원격협진 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취약지 응 급환자에 대한 원격협진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30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확보 및 운영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지원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2833-317)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권역외상센터의 인력 채용 부진 등으로 인 해 관련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법률상 전담전문의 기준 및 외상팀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권역외상센터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인력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하고, 권역외상센터가 체계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 며, 외상학 분야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1	공공자금 관리기금 상환액 감축 관련 재발 방지 및 「국가재정법」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응급의료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 상환(9221-920)	주의	보건복지부
		지적사항	○ 보건복지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액을 2025회계연도 상환 계획액 3,083억 8,800만원 대비 감축(△2,268억 200만원)하여 815억 8,600만원만을 집행(상환)한 영향으로 응급의료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액이 증가(+1,890억 6,700만원)함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되어 국가의 총괄적인 재정 소요에 따라 필요한 회계·기금 등에 재분배되어야 하는 자금이 응급의료기금에 귀속되는 수입으로 전환됨. ○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상환액을 당초 계획 대비 2,268억 200만원 감축 집행(상환)함에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 등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 심의·의결 절차를 준수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미상환 경위와 최근 5년간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내역 및 국회 보고 여부를 국회에 제출할 것 ○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운용을 철저히 하여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과태료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세입) - 과태료(56-563), 가산금(58-58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과태료 및 가산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나, 과태료 부과 원인인 법정 의무교육 의무이행을 높이기 위한 방안, 체납시 적극적 조치 방안이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이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과태료 및 가산금의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HACCP 제도 활성화(1032-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HACCP 인증업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 현장조사 실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물업체의 경우 부적합률이 상승하였음에도 현장조사는 줄어들고 사후관리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율을 제고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정기조사 수행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시조사 및 행정처분 연계체계를 정비하는 등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인증업체 증가 추이에 상응하는 사후관리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 정기조사 위탁 시행 전까지 수탁 기관의 조사 역량 확보 및 이해 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반·부적합 이력, 소비자 신고, 위해정보 등을 활용하여 고위험업체 중심의 수시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스마트 HACCP 등록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HACCP 제도 활성화(1032-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스마트 HACCP 등록률이 전체 HACCP 인증업체 대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축비용 지원 확대와 등록업체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강화 등 스마트 HACCP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4	스마트 GMP 구축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강기능식품 관리(1032-309)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2025년 말 기준 스마트 GMP 구축률은 3.8%에 불과하고,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업체의 구축률은 45.5%인 반면 10억원 미만 업체는 0.6%에 그치는 등 매출액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구축률이 저조하며, 업체별 구축비용에 비해 정부 지원도 일부에 그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 제조업체의 스마트 GMP 구축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제형별 선도모델과 표준 구축 매뉴얼을 현장에 맞게 보완하며, 스마트 GMP 구축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유인을 확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회계연도 말 예산 전용 및 집행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건강기능식품 관리(1032-309)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계연도 종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설문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2,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해당 설문조사가 필요하였다면 차년도 본예산 편성 또는 추경 증액 요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회계연도 말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것		
6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의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 적정 귀속 처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1032-315)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23년 수지차 보전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음에도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을 전액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대부분 자체 집행한 후 잔액만을 국고에 납입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및 「국고금 관리법」상 국고 납입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징수한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을 국고에 납입한 후 예산과정을 거쳐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체계로 전환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HACCP 인증 수수료 수입을 적정하게 귀속 처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의 청사 건립 관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1032-315)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신축 일정 지연으로 보조사업비 이월이 발생하고 향후 예산 집행에도 차질이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증원 청사 건립의 지연 방지를 위해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일정 변경에 따른 연차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것		
8	효과적인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방법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전예방적 위해관리(1131-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담배유해성관리법」이 2025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품목별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현재 465개 품목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으로 2026년 10월경 첫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될 예정임. ○ 담배의 제품별 유해성분 수치를 단순 공개할 경우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이 ‘덜 유해한 담배’로 오인되거나 마케팅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담배의 위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특정 제품을 ‘덜 유해한 담배’로 오인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유해성분 정보 공개방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신규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백 단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전예방적 위해관리(1131-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현행 규정상 신규 담배는 판매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에도 약 6개월이 소요되어 출시 시점에 따라 소비자가 유해성분 정보를 확인하기까지 최대 약 2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담배유해성관리법」을 개정할 것		
10	담배 유해성분 측정기준 일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전예방적 위해관리(1131-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할 담배 유해성분 함유량은 강화포집법(니코틴·타르 등이 일반포집법보다 2배 이상 높게 검출)을 적용하는 반면, 현행 담배갑에 표기되는 타르·니코틴 함유량은 일반포집법을 적용하고 있어 동일 제품임에도 검출 값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 혼란과 제도 신뢰성 저하가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사업법」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담배갑 표시와 유해성분 정보 공개의 측정기준을 조속히 일치시키고, 단기간 내 기준 일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두 수치가 달라지는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식품안전심업소 지정제도 법적 근거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식중독 예방 및 관리(1232-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2025년 전체 대상업소 중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11.4%에 불과하고, 일반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6.8%에 그치는 등 위생관리 제도의 현장 확산은 미흡한 수준임. ○ 또한, 2026년 현재 운영 중인 ‘식품안전심업소’ 제도와 「식품위생법」상 위생등급제 관련 규정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심업소’ 제도에 부합하도록 「식품위생법」상 위생등급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변경에 따른 영업자의 혼란과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안내 대책을 마련할 것		
1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1232-30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최근 4년간 23.9% 감소하고 신규 지정 건수도 46.3% 감소하였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3.4%에 불과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이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튼튼먹거리매장’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변화된 어린이 식품 구매환경에 맞게 우수판매업소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확대 및 성과지표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입식품 안전관리(1515-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해외직구식품은 반입 건수 대비 구매검사 비율이 정식 수입식품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현행 성과지표는 정식 수입식품의 사전관리 성과만을 측정하고 있어 구매검사, 위해제품 적발, 반입·판매차단 등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의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위해성분 함유 제품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점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것		
14	수입식품등 위생·안전교육기관 지정제도 및 교육기관 평가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입식품 안전관리(1515-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수입식품등의 위생·안전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이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근 3년간 교육기관 운영평가에서 기관운영, 교육과정, 만족도 평가 부문의 미흡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평가 결과를 사후관리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가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한 평가 및 사후관리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기관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요율 적정수준 산정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2032-302)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재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으로, 「약사법」 제86조의2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2015년부터 징수하고 있는데, 2025년 말 기준 부담금 적립금 누적액이 2025년 피해구제급여 지급액(27억 4,000만원)의 14.3배인 391억 9,327만원에 달하여 과다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적립금 누적액의 적정 규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부담금 부과요율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		
16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방법 다각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2032-302)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인의 제도 인지 경로 중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통해 인지한 경우가 2025년 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의료진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일반 국민 중심의 기존 홍보를 보완하여 의료인·약사 등 전문가를 통해 피해 환자에 대한 구제 제도 안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대상 및 방법을 다각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백신안전기술 지원센터 국가 셀뱅크 운영 내실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지원(2131-304)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국가 셀뱅크는 백신 개발에 필요한 세포주를 안정적으로 구축·공급하기 위한 기반 사업으로, 핵심 시약·소모품의 적기 확보가 실제 사업 수행과 직결되지만, 2025년도 시약·소모품 조달계약액(약 1억 3,750만원) 중 실제 납품액(약 6,690만원) 비율은 48.6%인 것으로 나타나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하여 구축된 인프라의 활용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제 세포주 구축·분양 계획과 조달 실적을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교부하고, 국가 셀뱅크가 국내 백신 개발의 기반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관리할 것		
18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사업 연도말 집중된 홍보예산 집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2231-30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사업은 예방홍보의 특성상 연중 지속·반복적인 노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 집행액 중 28.6%가 12월에 집행되는 등 연말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었고, 2026년 6월 기준 상반기 집행률 역시 19.5%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 예방 홍보가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월별 예산 집행을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2231-301)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방치된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은 참여약국 수가 적어 반납 접근성이 낮고, 참여약국에 대한 인센티브도 업무 부담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2025년 수거량이 520kg로 2023년 대비 41.0% 수준에 불과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참여약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급·관리비용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며 환자 반납유인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0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가계지원비 지급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2231-302)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예산 편성 당시 ‘인건비’ 산출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복리후생성 경비인 ‘가계지원비’를 임직원 133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6,650만원 지급하여,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편성하고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마약퇴치운동본부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2231-302)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25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2025년 1명의 장애인만을 고용하여 의무고용인원(5명)에 미달하였고,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1억 200만원을 납부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22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국가사무 수탁사업 수수료 수입의 적정 귀속 처리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지원(3032-30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2024년도 예산에서부터 수지차 보전기관에서 제외되었지만, 「의료기기법」에 따라 위탁된 국가사무인 1·2등급 의료기기 인증·신고 수수료를 국고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자체집행*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소관 수입의 국고 납입 의무 등에 위반 소지가 있으며, 수수료 금액과 집행 적정성 등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을 제한하고 방만 운용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21~'25) 수수료 수입(74억 9,400만원) 대비 국고 반납(2억 8,000만원) 비율: 3.7%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징수한 민간위탁사무 수수료를 국고에 납입한 후 예산과정을 거쳐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체계로 전환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연구용역 예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연구개발사업 관리(R&D)(4031-309)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내역사업을 통해 집행된 24개 과제 중 11개 과제는 사업 목적인 연구개발사업 기획 연구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의 일반 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함. 또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탁 교육 사업인 ‘식의약 연구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R&D 기획비 예산을 집행한 것은 부적절함.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업 목적 및 실제 집행 성격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4	소송 패소율 개선을 위한 송무 대응 전문성 및 역량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7036-309)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식약처 행정소송 패소율이 2021년 8.9%, 2023년 12.8%, 2024년 20.6%, 2025년 22.7%로 지속 상승하고 있고,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마련을 위해 송무 대응 예산 중 일반수용비를 2024년 3,200만원, 2025년 3,000만원 배상금으로 전용하여, 송무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송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배상금 지급을 위해 송무 대응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의약품 등 현지실사 관련 세입·세출 예산의 연례적인 과소계상 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7037-650)	제도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의약품 등 현지실사’ 사업은 해외 현지실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고 세입·세출 예산이 연례적으로 과소계상되어, 매년 초과수입과 초과지출 승인이 반복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 현지실사 수요, 최근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입대체경비 세입·세출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고, 연도 중 초과지출승인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다. 질병관리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권역별 지역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권역별 질병 대응 및 관리(6137-30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5년부터는 충청권 질병대응센터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만이 편성·집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감염병 발생 양상은 수도권의 해외유입 감염병, 농촌지역의 진드기 매개 감염병, 항만지역의 검역 관련 감염병 등 권역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특정 권역 중심의 연구만으로는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권역별 감염병 특성을 반영한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다수의 질병대응 센터가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과제의 차별성, 업무 연계성, 활용도 제고를 위한 면밀한 관리를 병행할 것		
2	권역별 고가 진단장비 운영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권역별 질병 대응 및 관리(6137-30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구입 단가가 1억원 이상인 장비 중 핵산추출기는 수도권과 호남권 질병대응센터만 보유중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권역별 검사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장비 배치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권역센터별로 구매, 임대 또는 공동 이용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여 진단 검사 활용도가 높은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개인보호구 비축 목표 대비 적정 비축 수준 확보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6년 5월말 기준 안면보호구, 장갑 등 일부 개인보호구 품목은 비축률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28년까지 전체보호구 1,557만개가 사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품목별 개인보호구 비축목표와 사용기간 만료 예정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보호구 확보계획을 마련하고 비축물품 재고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개인보호구의 적정 비축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 ○ 질병관리청은 품목별 비축 우선순위와 사용기간을 반영한 중장기 비축·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사용기간 만료 예정 물량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4	외국인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사업의 적정 예산 규모 검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집행 내역을 보면 2022년과 2024년에는 집행액이 없고 2025년은 예산액이 전년대비 1,300만원이 감액되었음에도 집행액이 900만원(6명×150만원)에 불과하여, 최근 5년 평균 집행률이 11.4%에 불과한 상황임. ○ ‘외국인 격리 입원치료비’ 내역사업의 목적에는 외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감염 환자에 대한 해당 국가의 치료비 지원 공조가 포함되는데,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제1급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상대국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집행실적, 외국인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및 감염병 유행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예산 규모를 재검토하고, 긴급 대응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질병관리청은 외국인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외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감염 환자에 대한 해당 국가의 치료비 지원 공조의 경우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제1급 감염병에 걸린 경우 상대국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감염병전문콜센터 운영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최근 6년간 감염병전문콜센터의 1인당 인입 건수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상담인력 900명 운영 시 1인당 22,511건이었으나 2025년 상담인력 20명 운영 시에는 3,127건으로 감소하였음. 특히, 상담인력이 20명으로 감원되었던 2024년 대비 인당 인입 건수도 1,004건 감소하였고, 2026년 5월 현재 인당 인입 건수는 969건으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6년 인당 인입 건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적정 예산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감염병전문콜센터의 전문성과 상담품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위기경보 단계별 인력 확충계획,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감염병전문콜센터의 비상 확장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전문콜센터의 전문성과 상담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전문콜센터가 평시 운영 효율성과 위기 시 신속한 확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평가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것		
6	실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6234-331)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기간의 연평균 실집행률은 약 10.7% 수준에 그쳐 여전히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또한, 2017~2025년 동안 발생한 불용액은 총 775억 4,400만 원에 달하는 등 예산 편성 대비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낮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추진 경과와 실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 질병관리청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보조금을 일괄 교부중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감염병전문병원 부지 확보 및 타 재정사업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면밀 수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6234-331)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5년 12월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협의·조정 과정에서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예정 부지 내에 교육부 국고지원 사업(주차장 증축 및 진출입로 신설사업)이 함께 추진되면서 부지 중복 문제가 발생함. ○ 이는 타부처(교육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지 활용 계획 및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동 사안과 관련하여 감사원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26.2)」 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추진 시 부지 확보 및 타 재정사업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보다 면밀히 수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총사업비 협의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6234-331)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KDI 적정성 재검토 결과 사업 규모(국비 및 자부담, 면적분담 등)에 대한 질병관리청과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간 이견으로 총사업비 협의·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지정 취소시 최소 5년 이상 사업 지연이 예상됨. ○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한 후 동 재검토 결과(대안)에 대한 해당 의료기관의 “수용불가” 입장으로 예산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당해연도 보조금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고 2026년 6월 현재까지도 협의 미완료로 인하여 이월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과 협의를 강화하여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대한 상호 간의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는 한편,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질병관리청은 경남권 감염병전문병원 사업 정상화 계획과 지연 시 대응 방안을 국회에 보고할 것 ○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당해연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문제가 재차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관리와 예산 편성 및 보조금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안전관리 점검제도의 법령 체계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물안전 국가관리 및 특수실험실 운영(6333-30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는 고위험병원체 취급 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보고, 자료 또는 시료 제출 의무, 출입·점검에 대한 수인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같은 법 제23조의2는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 준수사항 등에 대한 점검 결과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보고, 자료 등의 제출 및 출입·점검에 대한 수인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계속적인 절차상 의무를 부과하고,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관리 준수 여부 점검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제출서류의 세부 내용이나 확인 방법 등 기술적·실무적인 사항은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령체계를 정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BL3 실습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생물안전 국가관리 및 특수실험실 운영(6333-30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질병관리청은 BL3 연구시설 증가(* 18년 68개소 → 25년 103개소) 및 연구활동 증가에 따라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 BL3 기능과 설비를 갖춘 전문 실습교육 시설을 설치·운영 중임 ○ ‘생물안전복합교육시설 구축 및 운영’ 내역사업의 예산구조를 보면 장비 및 물품 구매와 시설 유지보수 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전문가 강의비, 교육 소모품비, 안내 홍보 물품 제작 등을 일반수용비로만 편성되어 있어 교육과정 자체를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거나 최신화하기 위한 예산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국내·외 생물안전 기준과 최신 실험기법을 반영한 교육과정 및 실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함으로써 BL3 실습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		
11	의료방사선의 적정 이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홍보 강화 등 사업 추진체계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6532-31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우리나라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나, 연구용역 추진과 정보시스템 운영 중심의 사업구조로 인해 국민 대상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국민 1인당 의료방사선 피폭선량: 2020년(2.46mSV) → 2024년(3.13mSV)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의료방사선 이용 및 피폭 현황과 관련 연구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특히 CT 등 고선량 검사의 적정 이용과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추진체계를 보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6631-309)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타당성 재조사 및 총사업비 조정 등의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연례적으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이 준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일정과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13	병원체자원의 확보 및 활용 실적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원체 자원은행 운영관리(6632-315)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병원체자원 분양건수는 2022년 4,925건에서 2025년 2,701건으로, 병원체자원 등재건수는 같은 기간 303건에서 191건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성과지표 상 성과목표는 실제 실적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연례적으로 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동 사업의 성과목표를 「병원체자원 관리 종합계획」의 추진방향과 최근 사업실적 및 사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핵심 병원체자원의 확보를 확대하고 연구·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참여자 모집 부진 및 오믹스 데이터 생산 지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6634-345)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총 77.2만명의 참여자를 확보하여 임상정보·오믹스·검체를 수집하고 이를 바이오 빅데이터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참여자 모집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참여자 모집 지연에 따른 검체·자원 확보 어려움으로 오믹스* 데이터 생산 실적도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연도별 목표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인센티브 제공 및 홍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목표 데이터가 적기에 생산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15	국립중앙인체자원 은행 증축 사업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II(R&D)(6634-352)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24년도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동시에 편성하여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세부 과업 내용과 추진방식, 과업별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조달청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증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사업의 일정·성과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R&D)(6634-362)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연구과제 선정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 순연되었고 예산 집행 실적 또한 저조하였음(2025년도 집행률: 66.9%). * mRNA 역할: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 정보를 담고 있어 우리 몸속 세포에 게 스파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역할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비임상·임상 단계별 마일스톤과 중단·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200일 내 백신 확보라는 사업 목표에 맞춰 과제 간 연계와 예산집행계획을 재정비할 것 ○ 질병관리청은 비임상·임상 연구의 중첩 추진 구조와 소수 과제 중심의 임상 연구 추진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의 일정 지연 또는 과제 수행 차질이 후속 연구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별 추진 일정 및 과제 이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17	의무직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채용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국립목포병원 인건비(4702-100)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5년 말 기준 전체 정원 96명 중 현원이 82.8명으로 충원율은 약 86%수준이나, 의무직공무원은 정원 5명 중 1명만 채용되어 결원율이 80%에 달함. ○ 의무직공무원의 높은 결원율은 최근 3년간 정원·퇴직·충원 현황에서도 확인되는 바, 2023년에는 의무직공무원 2인이 중도 퇴직하면서 현원이 없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2026년 현재 의무직공무원 1인만이 동 규정에 따라 일반임기제로 채용되어 결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 참고로, 의무직공무원 1인 외에 진료 업무 등은 공중보건의를 결원 중인 의무직공무원의 업무를 대체·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말 현재 2인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진료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의무직공무원 처우 개선 등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수 의료인력의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 필요 등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6134-309)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5년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대상인 56세가 포함된 연령층(50~59세)에서 전체 연령 대비 신고비율이 28.0%이나, 60세 이상이 58.9%를 차지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단일 연령인 56세로 C형간염 항체검사 대상을 한정할 경우 C형간염의 특성상 상당수 감염자가 오랜 기간 무증상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56세 전후 연령대에 존재하는 미진단 감염자를 국가건강검진 체계에서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음. ○ 한편, ‘바이러스 간염관리’ 내역사업의 일반수용비의 집행률이 52.5%로 저조한 것은 항체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신청 인원이 적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에서 항체검사(anti-HCV) 양성자에 대한 확진검사(HCV RNA 검사) 비용을 2026년 기준 7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지원 중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C형간염 검진 대상 연령의 단계적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검진 이후 확진검사 및 치료로의 연계 체계를 강화할 것		
19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 및 이비인후과 확대 지정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6134-309)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주요국 호흡기 표본감시기관 수는 미국 4,000개소(한국의 5.1배), 일본 3,000개소(한국의 3.9배), 영국 2,000개소(한국의 2.6배)이고, 인구 10만명당 감시기관 수도 우리나라는 1.6개소로 주요국보다 적음. ○ 한편,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의 진료과목 중 이비인후과는 전체 이비인후과 대비 참여율이 4.6%로 다른 진료과목의 참여율에 비해 낮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기관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진료과목별 분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이비인후과 등 참여가 저조한 진료과목에 대한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CJD 부검센터 운영 관련 전문인력 및 협력기관 양성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6134-309)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CJD 발생 현황을 보면, 총 362건으로 연평균 72.4건이 발생하였으나 뇌 조직 생검 및 부검 건수는 5년간 3건으로 연평균 0.6건에 불과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건의 뇌조직 생·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생·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도에는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도 낮은 상황임.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례적으로 CJD 부검센터 운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전용 시설 구축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CJD 부검을 통한 의사/추정(possible/probable CJD) 및 확진된 환자(definite CJD)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대체 수행기관을 찾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현행 CJD 부검센터 수행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CJD 부검 및 진단 전문인력 양성, 기술 전수 및 협력기관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CJD 국가 감시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체계(ASP)의 내실화 및 의료기관 확대 적용 필요 등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6134-309)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현재 ASP 시범사업은 주로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래 진료를 중심으로 항생제가 처방되는 의원급 및 중소병원은 사업 참여가 제한적임. ※ ASP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관리 활동(전담인력 지정, 지침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수가(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를 지급하는 사업임. ○ 호흡기감염병 등 항생제 처방 빈도가 높은 질환의 상당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형병원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항생제 사용량 감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2025년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 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민관협력 500만원, 항생제 사용관리 6억 6,800만원,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 12억 5,000만원 등으로 주로 감시체계 운영 및 ASP 중심으로 편성·집행되고 있고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은 사실상 찾기 어려운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를 중소병원·의원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22	결핵관리 전담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결핵예방(6136-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전담요원 배치를 통해 치료 비협조 환자 및 다제내성결핵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계획현액 117억 9,100만원 중 115억 1,200만원이 집행되었고, 7,7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2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결핵관리 전담인력은 결핵 감염 위험관리, 환자 교육 및 상담, 치료관리 등 전염성 질환인 결핵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결핵 환자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하여 그 처우는 낮은 상황임. - 2026년 1월 말 기준 채용중인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는 19명으로 전체 정규직의 6.5%이고, 전담요원의 경우 75명으로 전체 정규직의 12.6%임. - 2025년 결핵관리 전담인력 기준연봉은 전담간호사 38,812천원, 전담요원 38,846천원으로, 2025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연평균 추정임금(57,176천원)의 68% 수준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결핵관리 전담인력의 임금·고용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소규모 취약시설 결핵검진등 지원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결핵예방(6136-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5년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에서 학교, 의료기관, 군부대/경찰 등 3,617개의 집단시설과 집단시설 결핵환자 접촉자 8만 2,660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 133명이 발견되어 접촉자 10만명당 발생률이 160.96명에 이름. 이는 일반인구 발생률(33.5명)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임. - 또한, 밀접 접촉자 40,105명을 대상으로 한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는 9,501(23.7%)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되는 등 집단시설의 결핵감염 위험이 일반인구에 비해 높아 조기발견의 중요성이 매우 큼. ○ 현행 「결핵예방법」 제26조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랑인,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이나 학교 등 결핵검진등 실시 의무 대상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등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어 현재 검진 비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종사자 또는 해당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부담해 왔음. ○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 등이 행한 결핵검진등에 소요된 경비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 21773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이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임.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재정 효율성과 사업 효과성을 고려한 지원 우선순위 및 단계적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의무검진기관 조사 참여율 제고 필요 등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결핵예방(6136-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국내 결핵환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OECD 국가 대비 여전히 높은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고, 집단시설 중심의 결핵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음. - 2021년 7,161명, 2022년 6,252명, 2023년 6,205명, 2024년 6,185명, 2025년 7,070명 ○ 최근 실시한 검진의무기관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조사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조사대상 기관은 98,103개소였으나 실제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44,189개소로 전체 대상기관의 45.0% 수준에 그쳤고, 2025년의 경우 조사대상 기관은 94,362개소였으나 응답기관은 21,420개소로 응답률이 22.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기관을 기준으로 할 경우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률은 각각 88~93%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조사대상 기관 대비 조사 응답률 자체가 낮아 해당 결과만으로 실제 검진 이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현행 「결핵예방법」은 의료기관·학교·유치원 등의 장에게 종사자 및 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검진 실시 결과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결핵 검진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의무검진기관의 조사 참여율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는 검진 이행 점검체계를 구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치료 연계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결핵예방(6136-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2025년 결핵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핵환자의 가족과 집단시설 접촉자 10만 124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결핵환자가 223명(232.7명/인구 10만명당)이 발견된바, 이는 2025년 일반인구(33.5명/인구 10만명당)에 비해 약 7배 높은 수준임. - 특히, 가족접촉자 10만명당 결핵 발생률(572.6명)은 집단시설 접촉자(160.9명)보다 약 4배 높고 일반인구(33.5명)보다 약 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됨.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인구 10만명당 일반인구 및 집단시설 결핵 발생률보다 높은 가족접촉자 결핵 발생률을 고려하여 가족접촉자 결핵검진 결과에 따른 치료 연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26	결핵 취약계층 검진 지원체계 유지·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결핵예방(6136-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결핵 고위험군·취약계층 검진 및 관리지원’ 사업은 결핵 고위험군·취약 계층인 노인, 노숙인 등의 결핵관리를 위한 검진 및 치료·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임. ○ 2025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중 결핵환자는 14,85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28.9명인데 비해, 의료급여 수급자 중 결핵환자는 2,010명으로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이 128.9명에 달하여 건강보험가입자 대비 발생률이 약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발생률은 모두 감소추세(2021년 42.7명 → 2025년 31.8명)에 있으나 건강보험가입자 발생률 대비 의료급여수급권자 발생률의 격차(2021년 4.03 → 2025년 4.46)는 증가추세에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신체적·사회경제적으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결핵검진 체계를 유지·강화하여 결핵 조기발견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 효과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매개체 감시체계 확대를 위한 재정 기반 강화 필요 등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매개체 및 기생충 진단·감시·분석(6332-305)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기후변화 대응 매개체 및 병원체 감시’ 내역사업의 계획액은 2023년 대비 17억 9,700만원에서 2024년 8억 3,400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후 2026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에 감시지역이 2023년 123개에서 2025년 88개로 축소되고, 도심지역 조사는 제외되었으며, 일부 매개체에 대한 감시횟수도 감소하였음.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권역별 매개체 감시거점을 현행 16개에서 3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감시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가 매개체 감시체계의 고도화를 추진중임. ○ 기후변화와 해외유입 감염병 위험을 반영하여 감시지역과 주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매개체 감시·방제 중장기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감시지역 및 감시횟수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서식 환경과 감염병 위험 변화에 맞춰 감시지역·주기를 지속적으로 조정·보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미지급금 정산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예방접종실시(6431-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은 실제 접종 대상 인구가 편성인구를 계속 상회하면서 2023년 183억 1백만 원에서 2025년 593억 4,700만 원으로 약 3.2배 증가함. ○ 미지급금 발생은 국가예방접종 주요 대상인 영유아 인구가 당초 편성인원을 지속적으로 상회하였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인원 추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0~1세 편성인구 대비 실제인구 차이는 2023년 35,025명, 2024년 30,355명, 2025년 81,610명으로 연도를 거듭할수록 차이가 증가하였으며, 1세는 2023년 21,367명, 2024년 8,915명으로 하락하였다가 2025년 31,145명으로 대폭 증가함.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교부액을 조정하며, 누적 미지급금을 조속히 정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백신 도입·유통·접종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예방접종실시(6431-303)	주의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국민의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백신비, 접종시행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계획액 2,231억 3,400만원 중 2,231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고, 100만원은 불용되었음. ○ 2026년 2월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에서 예방접종 시행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백신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 사항이 확인됨. -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이물 신고는 1,285건인데, 질병관리청은 위해 우려가 있는 일부 이물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접종 보류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2021~2025) 국내 코로나19 백신은 총 1억 5천만 건 이상 접종되었으며, 오접종 신고는 누적 9,166건으로 집계되었고, 인정되지 않는 접종이 포함된 예방접종증명서가 총 515건이 발급됨. ○ 동 사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 시행 및 사업 관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백신 도입·유통·접종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국가예방접종 실시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예방접종실시(6431-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질병 부담 및 비용효과 측면이나 도입 우선순위가 높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질병관리청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4가 백신(19-64세 만성질환자 매년 1회)이 1순위, 폐렴구균(PCV13) 백신(65세 이상 1회 후 PPSV 순차접종)이 2순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9가 백신(12세 여아 2회)이 3순위임. ○ 인플루엔자로 인한 고령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국가 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질병청,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4.)에 따르면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기여 사망자는 5,257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고, 치명률도 0.136%로 직전 절기(0.072%)의 약 2배로 뛰었음. - 질병관리청은 이미 2020년 경제성 평가 연구에서 65세 이상에 대한 고용량 백신이 비용-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냈고, 2023년 국가예방접종 우선순위 연구에서도 고령층 고면역원성 백신 전환을 상위 순위로 도출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질병 부담 및 비용효과 측면이나 도입 우선순위가 높은 감염병에 대해 순차적으로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질병관리청은 어르신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에 도입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처리속도 제고 필요 등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가예방접종실시(6431-303)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5. 4. 22. 제정되어 2025. 10. 23. 시행되었고, 부칙 제2조가 법 시행 전 보상위원회 구성 등 준비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였음에도, 피해보상위원회·재심위원회는 법 시행 후인 2025. 11. 5.에야 구성되었고, 실질적인 심의는 재심위원회 2026. 4. 22., 피해보상위원회 2026. 6. 15.에야 개시되었으며, 시행령·시행규칙도 시행 직전에 개정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전반이 지체되었음. ○ 2026. 7. 28. 기준 신청 4,168건 중 심의는 63건으로 심의율이 약 1.5%에 불과하여, 특별법 시행 전부터 완화된 기준 적용을 기다려온 신청인 대다수의 대기가 장기화되고 있음. ○ 기타보전금의 2025년 집행률이 28.2%이고, 2026년 4월말 기준 집행률은 0.3%에 불과함.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신청이 상당수 접수되고 있음에도 집행이 저조한 만큼 이를 단순한 보상수요 감소나 수요예측의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배경 및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상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특별법 제정취지에 맞는 보상기준을 재정립하여 적극적인 보상을 추진할 것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심의체계 구축과 신청 전에 대한 심의·보상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과 연계한 지역사회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만성질환 예방관리(6533-308)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유사한 대상자(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2024년 결산 및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 질환관리와 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 기능을 연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음. - 질병관리청은 2025년 10월 의원실에 2027년도 개편을 목표로 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026년 2월 중기재정계획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음. ○ 한편, 현행 사업에서 65세 이상 등록환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 지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제공되고 있으나, 해당 지원이 치료 지속성이나 합병증 예방 등 건강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외부평가는 2018년 이후 실시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전문가 협의와 중기재정계획 반영 등 2027년도 사업개편을 위한 후속조치를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했는지 밝히는 한편, 현행 65세 이상 진료비 지원의 정책효과를 재평가하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동네의원의 지속적 질환관리와 등록교육센터의 다학제 기능을 결합한 지역사회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사업 참여율 및 참여 대상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만성질환 예방관리(6533-308)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내내역사업은 1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30~64세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교육·상담 등을 통해 고혈압·당뇨병을 관리받는 등록관리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30~64세 고혈압·당뇨병 환자 수: 2023년(670,524명) → 2024년(678,656명) → 2025년(685,623명) ** 30~64세 등록관리환자 수: 2023년(11,474명) → 2024년(9,693명) → 2025년(9,650명) ○ 한편, 대한당뇨병학회는 국내 소아·청소년의 제2형 당뇨병 유병률이 2002년 인구 1만 명당 2.27명에서 2016년 10.08명으로 4.43배 증가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30~64세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 대상에 소아·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고혈압·당뇨병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암역학조사 사업의 연례적 불용 문제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국민건강증진기금 - 만성질환 예방관리(6533-308)	제도개선	질병관리청
		지적사항	○ ‘암역학조사’ 내내역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의뢰가 발생하지 않아 2018년 이후 8년 연속 계획액의 87~93%가 불용되었고, 2026년에도 6월 기준 집행액이 2,100만원에 그치고 있음. ○ 또한, 질병관리청은 동 사업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전액 불용이 재발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질병관리청은 암역학조사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의뢰 전제 방식에서 국가 주도 조사 체계로 개편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및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정요구 조치결과 보고 시 정량적 이행 실적을 함께 제출할 것		

3. 부대의견

-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 문제에 대하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역할의 단계적 조정 또는 재설계 방안을 모색한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재난인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차관을 자살예방전담 차관으로 하고, 산하에 자살예방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종합적·체계적 협력체제를 마련한다.